

최종연구보고서

2013년도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연구중인 「경기도내 환경 산업분야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에 관한 연구의 최종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연구 기관 : 안진회계법인

연구책임자 : 양 우 석 (인)

연구기관장 : 이 재 술 직인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장 귀하

제 출 문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경기도내 환경산업분야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관명 : 안진회계법인

연구책임자 : 양 우 석

연구 원 : 연 경 흠

3. 결과 활용방안

결 과 활 용 방 안

I. 연구제목

“경기도청 환경산업분야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II. 본 연구의 배경과 필요

- 경기도는 환경산업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집중역량 지원(제도, 홍보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등이 우수한 환경기업의 시장경쟁 우위 확보 및 도내 환경산업체의 기술개발 등 경쟁력 유도할 필요가 있음

III. 연구의 결과 활용

- 경기도 우수환경산업 지정 평가지표, 평가표, 가점평가 개발을 통한 경기도 지정 제도 운영
- 환경산업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안 등 제도적 장치 운영

IV. 활용 후 환경개선 효과

- 시범운영 결과 11개 우수환경기업 지정
- 평가 운영기관 선정(경기테크노파크)을 위한 향후 지속적 운영

V. 연구활용의 방법

- 시범운영을 통해 선정된 환경기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 운영
- 운영 평가 및 제도적 운영에 대한 향후 운영상 보완점 검토(경기테크노파크)
- 인센티브 등의 확대 등을 통한 제도적 지속적 운영 방안 도출

요 약 문

I. 제목 : 경기도청 환경산업분야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경기도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우수 환경기업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우수 환경기업을 선발, 지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환경산업분야 우수기업 인증(지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인증(지정)제도 특성 분석
 - 환경산업체 개념(정의) 설정
 - 환경산업 분류체계 설정
 - 경기도 환경산업 분석
- 경기도/권역별 산업 특성 파악
 - 경기도 환경산업체 분류체계 수립
 - 경기도 환경산업 지역특성 분석
- 환경산업 인증(지정)제도 분석
 - 유사제도 비교 : 환경부 우수환경지정제도
 - 중앙정부/지자체 현황 비교 : 중기청 수출유망중소기업, 경기도청 유망중소기업(GSBC) 비교
 - 기타 : 환경부 녹색기업지정제도, 지자체(인천등) 지정제도 등
 - 경기도청 환경산업체 현황과 차별화에 대한 타당성 개발
- 운영프로세스 수립
 -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 개발
 - 운영기관 선정 : 경기테크노파크
 - 인센티브 선정 : 경기도청, 경기테크노파크, 안전회계법인
- 시범운영 및 향후계획
 - 시범운영 : 경기도청, 경기테크노파크 주관
 - 시범운영 결과 : 11개 환경기업 선정

IV. 연구결과

- 평가지표 개발 및 운영
 - 제조·건설분야, 환경서비스분야

분 야	업체 수	분야별 대상
제조건설 분야	7	시행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환경산업 특수분류 앞자리 1(제조) 또는 2(건설)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환경 유통·서비스 분야	3	시행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며 환경산업 특수분류 앞자리 3(유통) 또는 4(서비스)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시범사업 : 총 27개사 주 11개사 선정(건설제조 9, 유통서비스 2)

- 인센티브
 - 지정서 및 현판교부
 - 2014년도 기업맞춤형 사업 지원
 - ※ 세부적인 사업은 추후 공고 예정
 - 경기도 및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가점) 부여
 - 선정 기업 언론매체 홍보

V. 기대효과

- 주요 기대효과
 - 경기도내 우수한 환경기업을 경기도에서 직접 평가·인증 및 홍보함으로써 도내 환경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경쟁력 제고
 - 환경인증 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확대
 - 우수 환경기업 발굴·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 환경기술검증 국제상호인정체계 구축에 따른 해외사업 진출 활성화

VI. 연구결과의 활용계획(앞으로 할 일)

- 연구의 주요사항
 - 본 연구에서는 인증제도라는 명칭을 지정제도로 변경하여 추진함
 - 인증 -> 지정을 통한 산업군, 업체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경기도청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되, 시범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
 - 단순 지원방식이 아닌 운영기관(테크노파크)의 협조를 통해 시범사업 의견청취를 통해 인센티브 제도화 추진
- '14년도 추진일정
 - '13. 12. 2 : 우수환경기업 지정결과 공고
 - '13. 12. 6 : 지정서 및 현판수여
 - '14. 1 : 우수환경기업에 대한 맞춤형 사업 지원
해외 환경인증 취득, 해외 환경전시회 참여 등

목 차

제1장. 서론	5
1. 연구의 필요성	5
2. 연구의 개요 및 목표	7
2.1 연구 개요	7
2.2 연구 목표 및 주요 내용	7
3. 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	8
제2장 선행적 고찰	11
1. 환경산업의 정의	13
1.1 국내 환경산업 지원법	13
1.2 환경산업 정의	14
2. 국내외 주요 인증제도	19
2.1 국내 주요 인증제도 현황	19
2.2 해외 주요 인증제도 현황	25
제3장 연구수행 내용	35
1. 환경산업 현황	35
1.1 경기도내 환경산업 현황 분석	35
2. 제도 대상 및 범위 설정	39
2.1 국내 유사제도 분석	39
2.2 운영제도 방향설정	42
3. 제도 운영프로세스 개발	58
3.1 제도운영체계	58
3.2 평가지표 선정	59
3.3 평가항목 및 점수화	66
3.4 평가표 개발	69
3.5 가정 기준	77
3.6 인센티브 및 활용방안	77
3.7 추진체계	82

제4장 시범운영 및 향후 계획	87
1. 경기도 우수환경기업 지정 시범운영	87
1.1 시범운영 계획	87
1.2 시범운영 결과	112
2.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113
2.1 향후 계획	113
2.2 연구 기대효과	113

Content

Chapter 1. Introduction	5
1. Research needs	5
2. Research overview and Objectives	7
3. Research strategies and Methods	8
Chapter 2. Preceding research	13
1. The definition of the environment industry	13
2. Domestic and Global certification	19
Chapter 3. Detailed study	35
1. Environmental industry overview	35
2. Target and Scope	39
3. System operations process development	58
제4장 pilot operation and future plans	87
1. Pilot project	87
2. Conclusion and Expected results	113

경기도내 환경산업분야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연구원 : 연 경 흥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개요 및 목표
 3. 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최근 국내외 산업계에서는 환경 및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국내 주력산업의 성장둔화 및 고용불안 심화 (철강, IT 업종의 성장둔화)
 - 환경규제에 대한 무역규제 강화 (온실가스, 에너지에 대한 무역규제 강화)
 - 환경산업의 급성장 (신재생에너지, 개발도상국의 오염저감 기술 도입 등)
 - 신성장동력원으로서의 부각 (환경기술 수출, CDM 사업화 등의 다각화)

- 최근 국내외 환경산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2011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환경관련 사업체는 총 34,196개소, 환경분야 종사자수는 183,538명
 - 환경분야 종사자수는 183,538명이며, 환경부문 매출액은 59조 3,632억원 규모로 추정
 - 통계에 따르면 환경관련 사업체 수는 전년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제조업의 경우 전년대비 약 20%¹⁾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정부 등의 중소기업 인증·육성제도는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영세하고 부침이 심한 환경산업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혜 미비한 실정임
 - 경기도내 환경기업은 전국 최다로(3,535여개, 21%)²⁾ 다양한 산업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환경기술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로 자금 및 정보력의 열세 등 성장의 한계를 가짐

- 따라서, 환경산업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집중역량 지원(제도, 홍보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등이 우수한 환경기업의 시장경쟁 우위 확

1) 환경산업업종 중 2010년 제조업은 3,058개소, 2011년 제조업은 3,678개소(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통계자료 활용

보 및 도내 환경산업체의 기술개발 등 경쟁력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환경산업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산업군에 대한 지정을 통해 국내/외 경쟁력을 가진 우수기업 육성이 필요함
- 경기도내에서도 환경산업에 대해 환경산업체간 상호협력, 정보교류, 환경산업 여건 변화 공동대응, 환경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민·관 협력의 구심체로 환경산업 협의체 구성과 공감대 형성 필요성 제기
- 환경산업의 특성을 살린 평가지표와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평가기준으로 수혜기업을 확대하여 해당기업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 경기도내 환경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제도의 방향 설정이 필요
 - * 이를 위해 경기도내의 특화된 우수기업/기술을 육성하여 환경산업 및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함

2. 연구의 개요 및 목표

2.1 연구 개요

- 연구명 : 경기도내 환경산업분야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04. ~2013.12.(9개월)
- 연구범위
 - Phase I :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
 - Phase II : 경기도 내 산업 특성 파악
 - Phase III : 운영 프로세스 개발
 - Phase IV : 홍보방안 수립

2.2 연구 목표 및 주요 내용

-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경기도 내의 환경산업에 대해 주요 유망기업 및 기술을 육성하여 환경산업 및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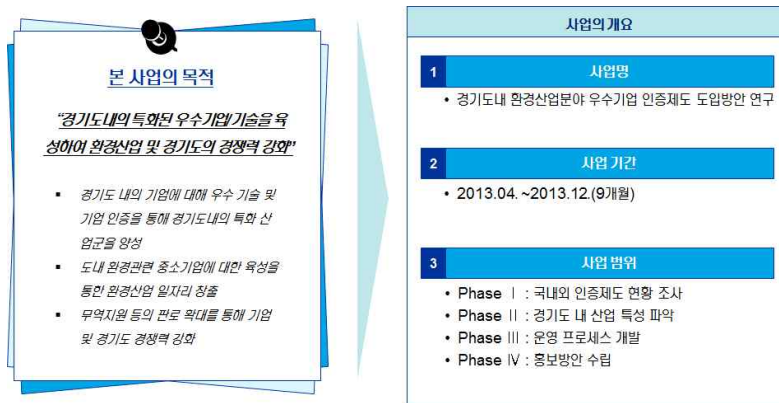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목적 및 개요

3. 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추진전략은 유사제도 연구, 경기도 지정(인증)제도의 특성, 운영프로세스 개발, 홍보 및 기대효과로 4단계에 걸쳐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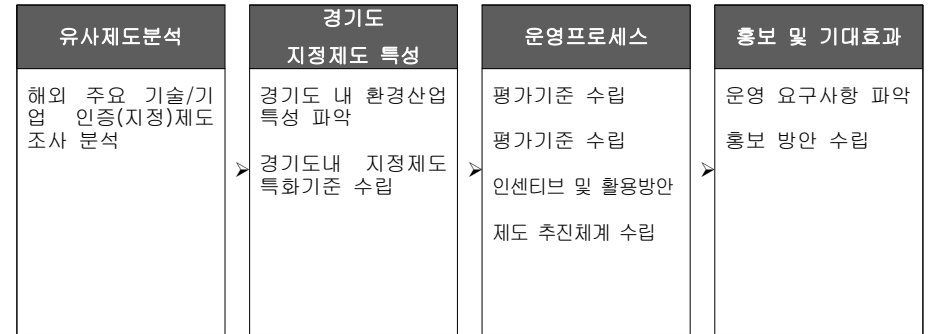


표 2. 연구 추진전략

- 국내외 유사제도 조상 및 분석
 - 국내/외 지정제도 현황 및 특성 파악
 - 국내외 제도의 특성 파악
- 경기도 내의 환경산업특성을 파악하고 특화된 지정제도 개발
 - 경기도 권역별 산업특성 분석
 - 경기도 지정제도 대상 및 범위 설정
- 지정제도 운영프로세스 개발
 - 평가지표 설정
 - 평가기준 개발
 - 인센티브 및 활용방안
 - 제도 추진체계 수립
- 홍보 및 기대효과 분석
 - 인증제도 운영방안 요구사항 조사
 - 인증제 홍보 방안 마련

- 단계별 진행은 상호 연계되어 진행되며, 이를 통해 경기도 내 환경산업 지원의 특화성에 대해 검토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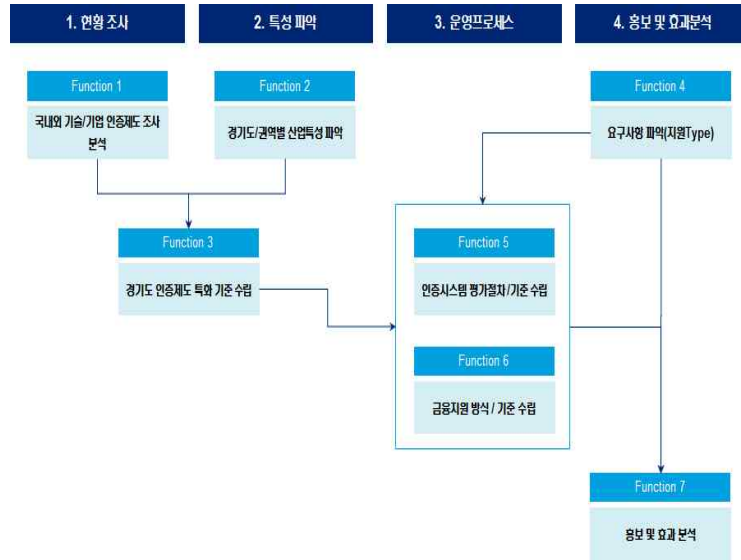


그림 2. 연구 세부 추진 단계

제 2 장 선행적 고찰

-
1. 환경산업의 정의
 2. 국내외 주요 인증제도
-

제2장 선행적 고찰

1. 환경산업의 정의

1.1 국내 환경산업 지원법

○ 국내 환경산업의 정의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으로 환경산업지원법을 기초로 함

<p>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p> <p>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p> <p>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p> <p>나. 그 밖에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p>
--

<p>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5(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p> <p>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제13조의3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p> <p>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재지정,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p>
--

표 3. 환경산업 지원법

1.2 환경산업 정의

○ 국내/외 환경산업에 대한 분류는 다음과 같음

- 국내 환경산업 정의(환경산업지원법) : 대기오염, 폐수,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 악화 등과 같은 환경적 유해요인을 측정, 예방, 제어하거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원하기 위한 제품생산, 시설건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국내 환경산업분류(환경산업특수분류)는 OECD/Eurostat의 기준에 따라 오염관리 그룹, 청정생산그룹, 자원관리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음

<p>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p>	<p>대기오염, 폐수,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 악화 등과 같은 환경적 유해요인을 측정, 예방, 제어하거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원하기 위한 제품생산, 시설건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p>
<p>JEMJ(Joint Environmental Markets Unit)</p>	<p>물, 대기, 토양오염을 측정, 예방 및 최소화하고 폐기물, 소음, 생태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p> <p>1. 대기오염 조절 2. 수처리 및 폐수처리 3. 폐기물관리 4. 토양오염복원 5. 환경컨설팅서비스 6. 환경측정 및 분석장비 7. 에너지 관리 8. 재생가능에너지 9. 소음진동조절 10. 청정기술 및 공장 11. 해양오염조절</p>
<p>OECD/Eurostat</p>	<p>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등과 관련된 피해를 측정, 예방, 제어 또는 복원하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p> <p>1. 오염관리그룹(Pollution Management Group) 2. 청정생산 및 제품(Cleaner Technologies&Products Group) 3. 자원관리그룹(Resource Management Group)</p>
<p>EBI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p>	<p>환경 평가, 환경규제 준수, 오염 통제, 폐기물 관리, 오염된 자산의 복원, 환경 자원의 제공과 관련하여 창출된 모든 매출</p> <p>환경 서비스, 환경 장비, 환경 자원</p>

그림 3. 국내외 환경산업 분류체계

- JEMJ와 달리 OECD는 청정기술, 자원관리, 오염관리의 3가지 대분류하에 세부분류로 나눔
- OECD는 EBI와 JEMU에 없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어업, 지속가능한 숲, 에코투어리즘을 환경산업으로 포함함
- EBI는 건설업을 따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OECD와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EBI와 JEMU 기준은 청정에너지를 실질적인 환경산업으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

○ OECD/Eurostrat 세부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음

그룹	분류	항목명
1.오염관리그룹 (Pollution Management Group)	1. 생산업	대기오염 통제기기 제조
		폐수관리 기기 및 제품 제조업
		폐기물 관리기기 제조업
		토양, 지표수, 지하수 개선 및 정확기기 제조업
		소음 및 진동 저감장치 제조업
		환경감시, 분석 및 측정장치 제조업
	4. 건설업	대기오염 통제관련 건설업
		오폐수관리관련 건설업
		폐기물 관련시설 건설업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건설업
	6. 유통업	폐기물 관리관련 유통업
	8. 서비스업	대기오염 통제관련 서비스업
		폐수관리관련 서비스업
		폐기물 관리관련 서비스업
		토양, 지표수, 지하수 청소 및 개선관련 서비스업
		환경연구개발 관련 서비스업
		환경관련 계약 및 엔지니어링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관련 서비스업
		교육, 훈련, 정보관련 서비스업
2.청정생산 및 제품 (Cleaner Technologies&Products Group)	2. 생산업	청정 및 자원효율 제품 제조업
3.자원관리그룹 (Resource Management Group)	3. 생산업	발전, 수도사업 및 에너지 보존 관련업
		재생재료 및 재활용제품 제조업
	5. 건설업	자원관리 관련 건설업
	7. 유통업	재활용제품 유통업
	9. 서비스업	자원관리 관련 서비스업

표 4. OECD/Eurostrat 분류기준

○ 국내 환경산업분류는 다양한 통계분류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나, 주로 환경산업특수 분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적용하는 7대 환경산업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환경산업특수분류 현재 환경산업통계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범위로 활용됨

분류 기호	항목명
1	환경기기 및 용품 제조업
11	오염관리 관련 용품 제조업
12	청정제품 제조업
13	자원관리 관련 제조업
2	환경관련 건설업
24	오염관리 관련 건설업
25	자원관리 관련 건설업
3	환경관련 유통업
36	오염관리 관련 유통업
37	자원관리 관련 유통업
4	환경관련 서비스업
48	오염관리 관련 서비스업
49	자원관리 관련 서비스업

표 5. 환경산업특수분류표

- 환경산업 7대부문 분류

구분	항목명
A	기후대기산업
B	물산업
C	환경복원/복구산업
D	환경안전보건산업
E	자원순환산업
F	지속가능환경/자원산업
G	기타 환경지식/서비스산업

표 6. 환경산업 7대부문 분류

※ 참조. 환경산업 7대부문

구분		업종	
A	기후대기산업	A1	대기/공기질측정및분석
A	기후대기산업	A2	대기오염,온실가스및오존관리
A	기후대기산업	A3	악취/냄새관리
A	기후대기산업	A4	실내공기관리
A	기후대기산업	A5	공기제어시스템
A	기후대기산업	A6	기상산업
A	기후대기산업	A7	친환경운송
B	물산업	B1	수질검사및분석
B	물산업	B2	상하수시설및수질오염관리
B	물산업	B3	폐수처리
B	물산업	B4	물순환,절약,재이용
B	물산업	B5	해수담수화
B	물산업	B6	용수공급
B	물산업	B7	생수생산,공급및가정용정수
C	환경복원.복구산업	C1	오염물질의측정및분석
C	환경복원.복구산업	C2	오염토양,지하수,지표수복원
C	환경복원.복구산업	C3	오염건물,자산의복원
C	환경복원.복구산업	C4	해양오염제어,방제
C	환경복원.복구산업	C5	부지오염,환경재해방지
C	환경복원.복구산업	C6	생태복원및환경조경
D	환경안전보건산업	D1	소음,진동의측정
D	환경안전보건산업	D2	소음,진동의관리
D	환경안전보건산업	D3	방사능의측정
D	환경안전보건산업	D4	방사능안전관리
D	환경안전보건산업	D5	인체위해성감측및환경성질환예방
D	환경안전보건산업	D6	기타환경보건안전관리
E	자원순환산업	E1	지정폐기물의수집및운반
E	자원순환산업	E2	지정폐기물의처리
E	자원순환산업	E3	지정외폐기물의수집및운반
E	자원순환산업	E4	지정외폐기물의처리
E	자원순환산업	E5	방사성폐기물의수집,운반및처리

E	자원순환산업	E6	폐기물저감및관리
E	자원순환산업	E7	폐제품해체및부품회수
E	자원순환산업	E8	금속광물자원회수재활용
E	자원순환산업	E9	화석원료소재재생및재활용
E	자원순환산업	E10	폐지재활용및산림자원절약
E	자원순환산업	E11	유기성폐기물의생물학적처리및재활용
E	자원순환산업	E12	폐기물연료화/에너지화
E	자원순환산업	E13	에너지회수
F	지속가능환경.자원산업	F1	자연환경자산보전및생태관광
F	지속가능환경.자원산업	F2	야생동식물관리
F	지속가능환경.자원산업	F3	지속가능산림관리
F	지속가능환경.자원산업	F4	생물자원활용
F	지속가능환경.자원산업	F5	대체에너지(신재생에너지)
F	지속가능환경.자원산업	F6	에너지절약,에너지효율향상
F	지속가능환경.자원산업	F7	대체물질및환경친화제품
F	지속가능환경.자원산업	F8	친환경공정,효율성향상
F	지속가능환경.자원산업	F9	그린빌딩,에코시티
F	지속가능환경.자원산업	F10	친환경세척및청소서비스
F	지속가능환경.자원산업	F11	기타친환경서비스
G	기타환경지식.서비스산업	G1	환경금융,보험상품
G	기타환경지식.서비스산업	G2	기타환경교육및홍보
G	기타환경지식.서비스산업	G3	기타환경컨설팅
G	기타환경지식.서비스산업	G4	기타사회시스템서비스

표 7. 환경산업 7대분류 세부분류

2. 국내외 주요 인증제도

2.1 국내 주요 인증제도 현황

2.1.1 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

- 국내 환경산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가 있음
 - 환경산업체 지원의 목적을 가진 가장 유사한 제도로서 경기도내의 환경산업 지원정책과 가장 연계성이 높은 제도임

구분	환경부
사업명	우수환경산업체지정
위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적	-환경분야플래그십 (Flagship company) 육성 -금융/수출/인력/마케팅등 패키지 지원 및 환경산업 육성지원 사업 우선 연계
신청대상	-업력 3년 이상의 환경산업 영위기업 및 환경산업특수 분류 해당기업
평가기준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 실적의 우수성 (20점) -보유기술력의 우수성(20점) -녹색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가능성, 시장성(20점) -신규고용 창출 가능성 (20점) -환경기술 수준의 발전 가능성(20점)
사업시기	년1회
사업기간	2012 ~
인증목표	10 개소 / 년
인증기간	5년

표 8. 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

2.1.2 중기청 수출유망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은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로서 수출기업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제도

구분	중기청
사업명	수출유망중소기업
위탁기관	중기청 지역센터
목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증진공, kotra 등 23개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비예산사업)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신청전년도 또는 신청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
평가기준	수출유망성, 수출활동능력, 기술성(서비스제공능력),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
사업시기	년1회
사업기간	2002 ~
인증목표	1000개 / 년
인증기간	2년 / 1회연장가능

표 9. 중기청 수출유망중소기업 제도

2.1.3 환경부 녹색기업지정제도

-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정부-기업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환경경영체제 구축, 자원 및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등 녹색경영 우수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도록 유인하는 제도
 - 녹색기업 지정 유지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족, 산업별·규모별 특성 포괄이 어려운 지정기준등이 장애요소임³⁾
 - * 현재 지정된 녹색기업은 제조업 97.3%, 비제조업 2.7%로 제조업 분야에 편중 경향을 보임
 - *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단 9개의 중소기업만이 녹색기업으로 지정

3) 출처: 녹색기업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명회 특강자료(2012), 한강유역환경청

구분	환경부
사업명	녹색기업지정제도
위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리에 있어 기존 지도/단속위주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탈피, 정부-기업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 -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환경경영 체제 구축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을 지정하는, 환경부의 대표적 녹색경영 정책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리현황, 환경성평가, 오염물질 관리현황, 환경개선계획 구비 - 과거 2년간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실형(100만원 또는 금고 이상) 없을 것 - 과거 2년간 환경친화기업 지정 취소된 사실 없을 것 - 대기·수질 배출농도규제치의 50% 이내로 관리될 것(SOx 80%, NOx 90% 이하)
평가기준	<p>평가기준 : 규모별·업종별 특화 및 세분화된 평가기준 14종에 따라 최종평가 점수가 총점의 80% (대기업 560점, 중소기업 480점) 이상 (제조 / 비제조업 구분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경영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경영체제 구축현황 · 녹색경영 목표수립 및 기업 간 협력 · 자원·에너지 · 온실가스·환경오염 · 녹색제품·서비스 · 환경정보공개 및 이해관계자 대응 -녹색경영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에너지 · 온실가스·환경오염 · 녹색제품·서비스
사업시기	년1회
사업기간	'08.12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개선 계획(안) 마련 '10.4.14 : "녹색기업 출범식" 개최(「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발효에 따라 환경친화기업이 녹색 기업으로 변경)
인증목표	10 개소 / 년
인증기간	최초3년 / 재지정 3년

표 10. 환경부 녹색기업 지정 제도

2.1.4 경기도내 주요제도 현황

- 경기도내에서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며, 주요제도는 유망중소기업 선정과 일자리우수기업인증 등이 있음
- 경기도 "Smart Green 경기" 체제 하에 녹색산업육성 정책은 아래와 같으며, 기존 정책과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제도의 방향성 설정이 요구됨



그림 4. Smart Green 경기

- 유망중소기업선정 및 일자리우수기업인증은 제도적 지표 선정과 운영절차에 대해 참고할 수 있음
- 특히 환경부와의 차별성을 위해 유망중소기업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인증제도의 항목에 대해 세부검토가 필요함

구분	경기도 기업정책과
사업명	유망중소기업선정
위탁기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목적	-경기도내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신청대상	-2년이상 운영 중인 도내 소재 중소기업
평가기준	□계량평가(공통) -경영평가(60):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특성평가(40):기술개발투자, 해외수출 및 고용 □비계량평가(제조/비제조) -일반평가(25):사업영위기간, 직장복지 및 후생수준 -기술·품질 평가(45):기술· 품질관리수준, 기술혁신노력 -가산점(30)
사업시기	년1회
사업기간	1995 ~
인증목표	250 내외 / 년
인증기간	5년

표 11.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선정

구분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사업명	일자리우수기업인증
위탁기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대상	-도내 소재 3년 이상 결산 한 중소기업 (단, 최근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 10명 이상, 근로자수 증가율 10%이상)
평가기준	-일자리 성장성 평가(40) :신규인력 채용 및 근로자수 증가율, 이직율 -사람중심의 일자리 평가(30) :교육훈련 실적, 근로조건, 열린경영/안정적 일자리, 공정한 인사관리, 사내 복지제도 -기업의 경영 및 특성평가(30) :사업영위기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기술개발투자, 해외 수출 및 기술 -가점(18)
사업시기	반기1회
사업기간	2009 ~
인증목표	20 내외 / 년
인증기간	2년

표 12.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인증

2.1.4 기타 제도

○ 기타 제도로는 녹색인증제도, Inno-Biz 인증제도,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제도, 녹색 중소기업 인증제도, 환경마크, 탄소성적제도 등이 운영 중임

○ 녹색인증제도

- 목적 : 민간 투자를 유인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 녹색 기술 및 사업을 명확화
- 녹색인증제도는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12.1월 기준으로 녹색인증 현황을 보면, 녹색인증 신청 1,429건, 인증 진행 577건 임 (분야별로 기술 486건, 사업 64건 인증, 녹색전문 기업 27건)

구분	인증신청	인증진행	인증발급
녹색기술인증	1,240	486	532
녹색사업인증	96	64	16
녹색전문기업	93	27	64
계	1,429	577	612

표 13. 녹색인증 신청 및 접수현황(`12.1월 기준)

- 분야별 인증 현황을 보면 10개 녹색기술 분야 중에서 그린IT 분야가 120건으로 전체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환경보호 및 보전 86건 (23%), 신재생에너지 59건(15%) 등의 순임
- 녹색기술의 정의는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녹색경영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으며, 대부분 내부 운영체계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됨
 - * 전략(2) : 비전, 전과정경영
 - * 시스템(2) : 실행체계 구축, 성과관리
 - * 자원/에너지(3) : 원/부자재 및 수자원관리, 재활용 촉진, 에너지관리
 - * 온실가스/환경오염(2) : 온실가스 감축, 환경오염관리
 - * 사회/윤리적 책임(2) : 정보공개, 법규준수

○ 이노비즈 인증

- 이노비즈 정의 :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 사업목적 :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강화, 기술개발자금, 개발기술의 상품화 및 시장 확보 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투자 지원
- 추진체계 : 중기청-기술보증기금
- 지원자격 : 창업 3년이상 중소기업
- 평가지표 :
 - * 기술혁신 능력(R&D, 체제 등)
 - * 기술사업화 능력(제품화, 마케팅 등)
 - * 기술혁신 경영능력(경영자 가치관 등)
 - * 기술혁신 성과(경영성과, 변화성과 등)

2.2 해외 주요 인증제도 현황

2.2.1 해외 주요 인증제도 현황

- 해외 인증제도는 환경산업의 특수성보다는 기업활동 또는 제품의 환경성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활성화됨
 - 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방식은 TYPE1과 TYPE3가 대부분 활용되고 있음
 - 인증의 범위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한 전체 대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음
 - * 환경산업과 같이 특정대상에 대한 범위설정과는 시각적 차이가 발생함

시행국가	운영주체	제도명	목적	인증기관
캐나다	민간	EcoLogo TM Program	제품 전과정 평가를 통해 동종서비스와 비교하여 우수한 제품 인증	TerraChoice
북유럽 5개국(이하 북유럽)	국가연합	Nordic Swan Label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에 기여	Nordic Ecolabelling Board
독일	정부	baluer-engel	소비자에게 환경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함	Federal Environmental Agency

미국	민간	Green Seal	환경 보호와 제품의 환경 친화적 제조, 구매, 사용을 장려하기위해	Green Seal Inc.
EU	국가연합	ecolabel	소비자에게 친환경적 제품 및 정보 제공을 위해	European Commission - DG ENVIRONMENT (G2)
체코	정부	ecolabel	제품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함	Ministry of the Environment
스웨덴	민간	Bra Miljöva	-	The Swedish Society for Nature Conservation
우크라이나	민간	The Program for Development of Ecological Marking in Ukraine	-	Living Planet
대만	정부	Green Mark Program	-	Environment and Development Foundation
태국	정부	Green Label	-	Thailand Environment Institute
스페인	정부	Aneor meido ambiente	-	Aneor
네덜란드	정부	Certi Q	그린(재생)에너지 생산 증명	-
독일	정부	EcoTopTen	소비필수품 환경인증	-
일본	정부	Eco-Action 21	ISO14001 중소기업형 보급	-

영국	정부	Acorn Method :BS 8555	중소기업 환경경영시스템 도입 지원	-
스페인	정부	E+5	공급망 상의 환경경영시스템 도입	-
오스트리아	정부	ECO Profit	환경경영 요건 및 청정생산 도입	-
중국	정부	Green Watch	기업환경관리 평가 제도	-

표 14. 해외 제품 및 서비스 인증제도

- 국가단위의 주요 인증제도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국가간 상호 인정은 국제 규격 (ISO)인 경우에 해당됨
- 국가 단위의 인증제도는 국제적 협의체인 국제환경라벨링네트워크(GEN:Global Ecolabelling Network)를 통해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으로 각각의 환경표지제도의 신뢰성을 서로 인정하고 있음

[국가단위의 인증제도 현황]

제도명	EcoLogo	Green Seal	EU Ecolabel	Eco Mark	녹색인증	환경표지
국가	캐나다	미국	EU	일본	한국	한국
형태	인증제도 ISO type 1	인증제도 ISO type 1	인증제도 ISO type 1	인증제도 ISO type 1	-	인증제도 ISO type 1
범위	북아메리카(국가)	미국(국가)	EU(국가)	일본(국가)	한국(국가)	한국(국가)
목적	엄격한 기준으로 환경적 리더십을 가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릴	환경적 책임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구매, 사용을 촉진시킴	소비자에게 친환경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를 촉진시킴	상품의 전 라이프사이클에 걸친 환경배려성을 평가함	유망 녹색기술 및 사업의 명확화 및 투자 활성화	소비자에게 환경성이 뛰어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구매촉진
인증대상	상품, 서비스(일부)	상품, 서비스, 기업	상품, 서비스	상품, 서비스(일부)	기술, 제품, 사업, 기업	상품, 서비스(일부)
지원체계	마케팅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받음	-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비용을 할인해 줌	-	홍자, 마케팅, 사업화기반, 사업화촉진 지원	입찰가산정, 판로지원,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용	인증등록비용 연간 인증서 사용비용	조기 평가 비용 연간 모니터링 비용	인증등록비용 연간 인증서 사용비	인증 사용비 연회비	인증등록비용	인증등록비용 연간 인증서 사용비

그림 5. 국가단위의 인증제도 현황

- 지자체 단위의 주요 인증제도 및 재정지원제도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지자체 단위의 인증제도 및 재정지원제도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동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음

[지자체 단위의 인증제도 및 재정지원제도 현황]

제도명	EcoLogo	EnviroStars Program	ecoBiz Queensland	Pollution Prevention Assistance Account (PPAA) Loan Program	Small Business Advantage Grant	e2 Programs for Businesses	The North West Fund for Energy & Environmental
국가	미국	미국	오주	미국	미국	미국	영국
형태	인증제도	인증제도	인증제도+재정지원 보조금	재정지원 융자	재정지원 보조금	재정지원 융자	재정지원 투자
범위	SF Bay area (지역단위)	워싱턴 주 (주 단위)	퀸즐랜드 주 (주 단위)	펜실베이니아 주 (주 단위)	펜실베이니아 주 (주 단위)	솔트레이크 시 (시 단위)	North West (지역단위)
목적	지역 내 존재하는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향상시킴	소기업이 유해물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을 도움으로써 공중 위생, 환경을 보호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향상시킴으로써 수익향상, 비용절감 등을 도움	소기업이 쓰레기, 오염, 에너지 사용을 줄이도록 돕기 위해 융자를 제공함	소기업에게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도움	시에 존재하는 기업군 전체의 환경적 운영,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움	에너지와 환경 부문 기업의 성장을 위한 유동적 자금 지원
인증대상	기업(공공기관 포함)	지역 중소기업	지역 기업	지역 중소기업	지역 기업	지역 기업	지역 중소기업
지원체계	20개 산업이 존재	700개 이상의 기업이 인증을 받음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지원체계	기술적 조언을 받을 수 있음	기술적 조언을 받을 수 있음	환경오염성 향상 활동(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 1,000~150,000 달러	융자(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저리융자 제공 최대 100,000달러, 활동비용의 75%, 이자 2%	최대 7,500달러, 활동(프로젝트) 비용의 50%까지 지원함	활동비용에 대한 저리 융자 제공 5,000~100,000달러	사업 개발조기단계부터 무역사업확장까지 넓은 영역에 대한 투자 지원 200,000~120만 파운드 사이의 자금
비용	명목적 수수료 존재	없음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그림 6. 지자체 단위의 인증제도 현황

2.2.2 해외 지자체 단위 지원형태 분석

- 해외 제도 중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환경관련 재정적 지원체계를 분석하고자 함
- 지자체 지원 가능한 인센티브 범위 검토 목적이며, 제도 설계에 대해서는 국내 유사 사례로 분석, 도출할 예정임
- 지자체 지원체계
- 사례1. US 펜실베이니아 주(Pennsylvania)

Pollution Prevention Assistance Account (PPAA) Loan Program	
개요	펜실베이니아 주에 위치하고 있는 영리 소기업을 대상으로 쓰레기, 오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프로젝트에 대해 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전체 프로젝트 진행 비용의 75%에 대한 자금을 빌릴 수 있으며, 12달 기간 동안 최대 융자 금액은 100,000달러임. 이 자금은 오염을 막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통해 소기업이 환경적 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임

지원대상	펜실베이니아 주에 위치하고 있는 합법적 기업 중, 100명 이하의 정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만이 신청 가능함
지원활동	기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문에 대해 오염방지 혹은 에너지 효율화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원료를 줄이거나 재사용하고, 쓰레기 양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경우에 해당함 장비 혹은 물품의 구매, 건물 개조를 포함하는 운반 및 설치 비용 모두 가능함 기업은 스스로의 오염 방지 혹은 에너지 효율화 과정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활동항목	1)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2) 페루프 냉각 혹은 공정용수 시스템 3)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감축을 위한 장비 혹은 과정 4) 화학적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장비 혹은 과정 5)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 6) 재사용 가능한 물질 조절 장비
재정지원	최대 융자금액은 100,000달러이고,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75%가 융자 가능함 융자는 다른 자금처(다른 대출기관, 투자자, 혹은 기업소유주)에서 조달하는 자금과 함께 조성될 것이며, 이는 프로젝트 비용의 나머지 25%를 조달할 것임 타 기관으로부터의 융자는 PPAA융자 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함 모든 융자는 하나 이상의 자본에 대한 담보를 요구함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이자는 2% 고정금리임. 지원 비용은 없음

- 사례2. US 솔트레이크 시(Salt Lake City)

SLC Green - e2 Programs for Businesses	
개요	솔트레이크 시의 기업 공동체가 더욱 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임 프로그램은 모든 영역의 기업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 연결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탁월한 방법임
혜택	프로그램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적 오염을 줄이는 것을 도와줌 효율성 향상은 에너지 사용, 물 사용, 쓰레기 발생 등을 포함함 e2 기업 멤버는 아래의 항목을 얻게 될 것임 - 솔트레이크 시의 스탬프를 통해 전체 운영 비용을 줄이고 영향을 평가하는 부문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음 - e2기업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 기회가 주어짐 - 주기적인 e2 기업 뉴스레터를 통해 최신 활동과 기회를 얻음

비용	비용은 들지 않으며, 솔트레이크 시에 의해 지원되고 운영됨.
재정지원	Salt Lake City Revolving Loan Fund 가 기업을 지원함 * e ² RLF (Energy Efficient Renovation Loan) : 솔트레이크 시에서 2년이상 운영한 기업에 대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융자 : 최소 5,000달러에서 100,000달러까지 가능함 : 3년을 기간으로 하며, 이자율은 고정 : 담보는 융자금액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것을 요구함

- 사례3. 영국 North West

The North West Fund for Energy & Environmental		
개요	에너지와 환경 부문 내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유동적인 자금임 에너지 환경 부문은 다양한 상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포함하지만, 이 모든 것은 생태계에 영향을 크게 줄이면서 낮은 가격으로 좋은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지원범위	해당 부문은 아래 범위를 포함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청정 연료 생산 전기 혹은 열 생산 전기 혹은 열 운송 교통, 산업, 건물 환경에서의 에너지 사용 물 및 폐수처리 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 </td> </tr> </table>	청정 연료 생산 전기 혹은 열 생산 전기 혹은 열 운송 교통, 산업, 건물 환경에서의 에너지 사용 물 및 폐수처리 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
청정 연료 생산 전기 혹은 열 생산 전기 혹은 열 운송 교통, 산업, 건물 환경에서의 에너지 사용 물 및 폐수처리 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		
재정지원	200,000파운드에서 120만파운드 사이의 자금을 제공함 투자는 사업의 시작과 개발초기단계에서부터 무역사업을 위한 확장계획까지 넓은 영역에 걸쳐 지원할 것임 투자는 자기자본과 함께 이루어 질 것임 CT Investment Partners 가 본 기금을 관리할 것임 최소 지원 금액은 50,000파운드로 그 이하의 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다른 기금을 이용할 것을 권함	
지원대상	영국의 North West 내에 위치해야함. 특히 Cumbria, Lancashire, Greater Manchester, Merseyside 혹은 Cheshire에 위치해야 함. 기금은 오직 North West 지역에 위치한 기업을 지원하는 곳에만 사용할 수 있음 EU에 의해 지정된 중소기업 기준은 아래와 같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 249명 이하의 직원 - 매출액이 5,000만유로 미만 - 대차대조표가 4,300만유로 미만 </td> </tr> </table>	- 249명 이하의 직원 - 매출액이 5,000만유로 미만 - 대차대조표가 4,300만유로 미만
- 249명 이하의 직원 - 매출액이 5,000만유로 미만 - 대차대조표가 4,300만유로 미만		

- 사례4. 호주 퀸즐랜드 주(Queensland)

ecoBiz Queensland	
개요	ecoBiz 프로그램은 기업이 환경적 성과를 향상시킴으로써 수익을 얻고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 프로그램은 에너지와 물소비를 줄임으로써 비용 절감을 하는 부분과 더욱 생산적으로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절감하는 방법으로 나뉨 궁극적으로, 향상된 환경효율성은 강한 시장 선점과 경쟁력을 야기시킬 것임
원칙	<p>환경효용성</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품과 서비스의 밀도를 낮춤: 적은 투입으로 많은 산출물을 생산함 2) 상품과 서비스의 에너지 밀도를 낮춤: 적은 에너지로 많은 산출물을 생산함 3) 유해물질의 확산을 줄임: 덜 유독한 물질의 사용 4) 물질의 재활용을 향상시킴 5) 신재생원료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최대화 함 6) 물질의 내구성을 확장함 7) 상품과 서비스의 서비스 밀도를 높임: 물질이 아닌 서비스로 요구를 만족시킴 </div>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 양식 작성 2) 기준치 평가: 자원 소비 현황 평가 3) 현장 조사: 향상 기회를 확인함 4) 활동계획: 환경효과적인 향상을 보여줌 5) 이행: 활동 계획 항목의 이행 6) 재평가: 자원의 소비가 줄어들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재평가함
마크	ecoBiz의 6단계를 거치면, 기업은 ecoBiz 파트너가 되고, 상품의 홍보에서 ecoBiz 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재정지원	<p>몇몇 경우에는 기업이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행한 환경효율성의 향상에 대한 ecoBiz 보조금을 받을 것임 보조금은 자원, 에너지, 물을 보존하고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익을 분명하게 입증한 기업에게 주어지며, 이때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이익이 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은 1,000달러에서 최대 150,000달러범위에서 주어짐 참가 기업에 의해 준비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을 완료한 이후에 지급이 가능함 보조금은 자본설비 비용의 최대 30%까지로 제한함</p>

- 사례5. US Florida Green Lodging Program

Florida Green Lodging Program	
개요	2004년부터 시작 플로리다 환경보호국(Florid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의 자발적 이니셔티브 제 3차 기관 인증 프로그램
목적	숙박시설이환경보호를인식하고디자인하여플로리다의자연환경보존및보호를이행하기위해 호텔숙박산업의운영시스템을평가하고, 목표 설정과 특별한 활동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환경적 성과를 향상시킬수 있도록 함
운영	<p>자산평가 및 아래의 5가지 영역 중 몇 가지 영역의 활동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케이션과 교육(고객, 임직원, 공공) > 폐기물 감축, 재사용, 재활용 > 수자원 보호 > 에너지 효율 > 실내 공기질 개선
지정신청	<p>최근 프로그램 재설계 재설계 각 부문별로 환경의 중요도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여 환경영향을 평가 각 부문의 환경적 기준 확대 각부문별 최소 총 점수 요구 신청자는 지정 최소 총점수를 충족하는 한에서, 평가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p>

제 3 장 연구수행 내용

-
1. 환경산업 현황
 2. 제도 대상 및 범위 설정
 3. 제도 운영프로세스 개발
-

제3장 연구수행 내용

1. 환경산업 현황

1.1 경기도내 환경산업 현황 분석

○ 경기도 환경산업 분류 (환경산업 7대부문)

- 자원순환산업, 물산업, 지속가능환경·자원산업, 기후·대기산업 순으로 환경산업이 분포함
- 자원순환산업 내 주요 업종(상위 3개) : 지정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180개), 비금속 원료 재생업(169개), 금속원료 재생업(90개)
- 물산업 내 주요 업종(상위 3개) : 액체 여과기 제조업(72개),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3개), 분뇨 처리업(42개)
- 기후·대기산업 내 주요 업종(상위 3개) : 기체여과기 제조업(35개), 공기조화장치 제조업(29개),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17개)
- 지속가능산업 내 주요 업종(상위 3개) : 기타목재가구 제조업(18개), 일반용 전기조명장치 제조업(10개), 건축물 일반 청소업(8개)



그림 7. 경기도 환경산업분류(7대부문)

- 지리적 위치는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등 경기도 서쪽 지역에 다수의 환경산업체가 위치하고 있음



그림 8. 경기도 환경산업체 지리적 분포(환경산업부문 분포 상위업체)

- 경기도 환경산업체 부문 간 비교분석을 통해 산업군별로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를 제도도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경기도 환경산업 부문/업종 간 사업특성, 지리적 위치, 매출액 규모 차이가 큰 특성을 고려해야 함

자원순환 산업 (금속원료 재생업)	비교 항목	기타 환경지식서비스산업 (환경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66개	업체 수	13개
폐기물 매입/수출, 전자폐기물 재활용/수거, 폐차장 등	업종 특성	환경플랜트 설계 및 시공, 환경계측/시험 분석 등
화성(13), 고양(10), 시흥(9), 김포(7) 등	지역적 분포	성남(5), 안양(4), 군포(2), 평택/화성(각 1)
1~10억(5개), 10~100억(13개), 100억 이상(11개)	업체 당 매출액	1~10억(5개), 10~100억(2개), 100억 이상(2개)
10인 미만 ~ 5,000인 미만에 분포	업체 당 종업원 수	10인 미만 ~ 1,000인 미만에 분포
폐자재 수거/판매업이 대다수이며, 경기도 외각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	결론	환경 플랜트 설계 및 환경분석업이 대부분 서울인근지역에 주로 위치하며 매출액 규모는 적은 편

표 15. 경기도 산업군별 특징 비교

- 환경산업체의 주요지표인 매출액과 종업원수에 대해 환경특수분류로 재분류하여 검토
 - 환경산업특수분류로 재분류 (3553개소)

행 레이블	건설업	서비스업	유통업	제조업	기타	총합계
기타 환경지식·서비스산업	1	37		1	23	62
기후·대기산업	28	24	18	220	51	341
물산업	159	151	45	355	230	940
자원순환산업	53	279	329	602	413	1676
지속가능환경·자원산업	18	20	29	271	35	373
환경복원·복구산업	24	29	5	25	16	99
환경안전보건산업	7	8	2	20	7	44
총합계	290	548	428	1494	775	3535
비율	8.2%	15.5%	12.1%	42.3%	21.9%	100.0%
기타제외	290	548	428	1494		2760
비율	10.5%	19.9%	15.5%	54.1%		

표 16. 경기도내 환경산업체 재분류표(환경산업특수분류체계)

- 경기도내 환경산업체 3553개소를 대상으로 매출액 및 종업원 수 파악
- 물산업 분야가 업체 당 매출액 및 종업원 당 매출액 수준이 가장 높으며, 각 부문 내에서 업종별 매출액 수준은 차이가 많이 남

환경산업 부문	자원순환 (1,676)	물 (940)	지속가능 환경 (373)	기후대기 (341)	환경복원 복구 (99)	환경지식 서비스 (65)	환경안전 보건 (44)
업체당 매출액	821	1,425	660	355	213	84	256
종업원당 매출액	5.6	8.9	6	5.1	2.1	0.9	8.2

표 17. 경기도 환경산업체 매출액

- 관련산업을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유통업으로 구분한 결과 제조업의 매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As of: 07/29/2013 11:43:47
 Produced with ACL by: Deloitte & Touche
 Command: CLASSIFY ON_매출액
 Table: 경기도청_환경산업체 분류
 N= 1,709

구분	평균 : 매출액	구분	평균 : 총 종사자	종업원당 매출액	최대값 : 총 종사자
제조업	1,870	제조업	252	7.4	96,636
서비스업	746	건설업	188	3.2	4,990
건설업	612	서비스업	126	5.9	11,156
기타	372	기타	62	6.0	2,189
유통업	92	유통업	39	2.4	613
총합계	108,390	총합계	175		

그림 9. 경기도 환경산업체 매출액 재분류

2. 제도 대상 및 범위 설정

2.1 국내 유사제도 분석

- 본 연구 목적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는 산업 육성이라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동일한 목적에 대한 유사제도에 대해 참고하도록 함
- 환경부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업을 선정하여 동일산업군의 대표적인 선도기업으로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
- 경기도내 유사제도로 지원할 경우 일부 중복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게 됨
- 경기도는 대상 범위의 설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향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구분	우수환경산업체지정(환경부)
법령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우수환경산업체 정의	우수한 환경기술 및 사업실적을 보유한 환경산업체로서 국내환경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환경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대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을 견인하는 기업
사업목적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환경분야 플래그십(Flagshipcompany) 육성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한 금융/수출/인력/마케팅등 패키지지원 및 환경산업육성지원사업 우선연계
추진체계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신청기업
신청자격	-업종: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11.10.29시행)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산업'영위기업 -업력: 업력 3년(설립일기준) 이상인 기업으로,최근 3년 회계결산재무제표 보유기업
제외대상	환경부고시(제2013-46호) 1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중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에 한하며, 확정된 경우 (특허심판원) 2과학기술기술평가본법제11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3신청기업이 휴업·폐업중인 경우 4세무당국에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중인 경우 5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평가지표	5개항목 15개지표 1.사전검토 적합기업 2.심사위원회평가 종합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기업 3.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및 최종지정심의 4.심사위원회평가지 가점기준
------	--

표 18.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세부내용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동일 목적인 유망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분석
- 경기도청은 중앙정부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인증/지정제도를 개발 운영함
- 경기도, 중기청 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제도이나, 경기도는 첨단기술, 중기청은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화 정책을 가짐

구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중기청)
목적	경기도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자력수출능력이 부족하지만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매년 1,000개씩 발굴하여, 중소기업청, KOTRA 등 15개 수출유관기관의 유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을 집중육성
지원 계획	250개 내외 기업	1,000개
법적 근거	-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29호(2011.10.17))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 대상 업체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요령에 정함을 목적
대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중소기업 중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업체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신청전년도 또는 신청년도의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지표가 양호한 기업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
지정 분류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관련)	제조업/서비스업 * 표준산업분류 서비스업 지정대상 정의

표 19.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제도적 차이

○ 기타 제도의 특징을 도출하여 경기도 인증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과 녹색인증제, 이노비즈 인증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우수환경
산업체의 주요 지표는 유사하게 적용가능하나, 기타 녹색인증제, 이노비즈 인증등은
산업군이 아닌 내부 환경 프로세스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제도로 분리됨

No.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녹색인증제	이노비즈 인증
용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환경산업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환경기술 및 사 업실적을 보유한 환경산 업체로서 국내 환경시장 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환경시 장에서의 경쟁력 확대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을 견인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기술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 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 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 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노비즈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 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을 지칭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분야 플래그십 (Flagship company) 육성 •금융/수출/인력/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및 환경산업 육성지원사업 우선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투자를 유인하여 녹 색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 녹색 기술 및 사업을 명확화 •적격 투자대상의 제시를 통 해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강화 •기술개발자금, 개발기술의 상품화 및 시장확보 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투자 지원
추진 체계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관계부처 합동-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기청-기술보증기금

지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산업 영위기업 •업력3년이상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전문기업은 창업 후 1 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3년이상 중소기업
평가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실적 우수성 •보유 기술력 우수성 •기술활용 가능성/시장성 •신규고용 창출 가능성 •환경기술 수준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기대효과 •녹색기술 활용성 •정책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혁신 능력 (R&D, 체제 등) •기술사업화 능력 (제품화, 마케팅 등) •기술혁신 경영능력 (경영자 가치관 등) •기술혁신 성과 (경영성과, 변화성과 등)

○ 경기도내 환경산업체 지원 범위 및 특성 개발

- 경기도내의 환경산업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내 환경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수출 확대등에 대해 지원을 특화하
여 선정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기타 환경산업의 분류를 포괄적으로 하되 평가 운영 시 적절한 배분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됨

2.2 운영제도 방향설정

○ 경기도 환경산업체 지정제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요와 목적을 설정하여 운영하
도록 함

제도 개요	주요의견	
제도 도입의 목적	경기도내 환경산업체 지원 필요성	확정
제도형태	지정 / 평가 / 지원	확정
적용범위	지자체(주, 도시, 지역)단위의 제도	확정
인증대상	지역 내 해당 기업 대상 (중소기업, 수출기업, 일자리 확장 기업)	확정

운영체계	인증절차 및 운영·관리 체계 (경기테크노파크)	확정
지원체계	마케팅, 판로 제공 등	검토

표 21. 제도의 구체적 방향성 설정

- 환경산업체의 특성은 중소/영세업체로 파악되었으며, 정부 등의 중소기업 인증·육성 제도는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영세하고 부침이 심한 환경산업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혜 미비
- 환경산업체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 개념 설정
 - 환경산업체의 경우 지정제도를 통해 육성 및 지원이 적정함
 - ※ 인증제도와 지정제도의 명확한 구분은 없으나, 인증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 제3자가 공개된 데이터를 통해 인증(절대평가)을 하게 되며, 지정은 특정 집단 또는 세부 범위에 대해 포함되어 선택적 지정(상대평가)을 할 수 있다.
 - ※ 현행 지정 제도는 ① 기존 인허가나 특허로서의 지정, ②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 ③ 지원·육성 대상의 선정을 위한 지정, ④ 규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혼합되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참고 법제교육포털)
- 경기도청 환경산업체 지정제도를 위한 사례 검토결과 경기도 특화성 개발
 - 유사제도 비교 : 환경부 우수환경지정제도
 - 중앙정부/지자체 현황 비교 : 중기청 수출유망중소기업, 경기도청 유망중소기업 (GSBC) 비교

- ※ 환경부 유사제도와의 차별성

 - Target : 중소기업, 수출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 환경부의 경우 플래그십(Flagship company) 육성 ⇒ 대기업군
 - * 경기도청의 경우 중소산업체의 도약 육성 ⇒ 중소기업군
 - * 수출 및 일자리 ⇒ 지표화/점수화 반영

- ※ 산업체 지원부서와의 차별성

 - 타 산업군에 비해 영세하고 경영환경의 변화가 심한 특수성으로 유사지원제도에 소외됨
 - 별도의 환경산업체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경기도 환경산업체 활성화 필요

표 22. 경기도 환경산업 지정제도 특화성

- 환경산업체 부문 분류 방안
 - 환경부/경기도청 환경산업체 7가지 부문에 대한 재분류 검토
 - 현분류 : 자원순환산업, 물산업, 지속가능환경자원산업, 기후대기산업, 환경복원복구산업, 환경안전보건산업
 - 재분류(案) : 생산분야(제조업, 건설업), 서비스분야(유통업, 서비스업)
 - ※ 환경산업체 지원이 필요한 업종분류가 필요하며, 지정 우선순위 검토 필요함
- 환경산업체 지정 지원업종 분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산업' 영위기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환경산업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사업실적이 우수하거나 보유기술 및 서비스가 뛰어난 기업

창업 이후 일정기간(2년) 이상이 경과한 기업

표 23. 환경산업체 지원업종

-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 기준에 따라 분류
 - 환경기기 및 용품 제조업
 - 환경관련 건설업
 - 환경관련 유통업
 - 환경관련 서비스업

분류 기호	KSIC (9차)	항목명	품 목 명
1		환경기기 및 용품 제조업	
11		오염관리 관련 용품 제조업	
111		대기오염 통제기기 제조	
1111		기체취급기기	
1111a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슬러지 이송
1111b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진공펌프, 냉장설비용 압축기, 예 인용의 바퀴달린 사시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기타 기체 압축기 및 후드, 관련 부분품
1112		축매컨버터	
1112a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기체여과기와 청정기, 관련부품
1112b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배기가스 감소장치, 매연저감장 치(DPF), 디젤산화촉매장치(DOC)
1113		화학적 복구 시스템	
1113a	07111*	석회석 광업	석회석용제
1113b	08090*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1113c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 조업	활성토
1113d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 업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 슘
1113e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소석회와 수경성석회
1113f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기체여과기와 청정기, 관련부품
1114		집진기	
1114a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기체여과기와 청정기, 관련부품
1115		분리기, 침전기	
1115a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 업	기타 유리섬유 제품
1115b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기체여과기와 청정기, 관련부품
1115c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 기 제조업	기체액화용 기기
1115d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 조업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물질취급 기계
1116		소각로, 세정기	
1116a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기타 비전기식 노 및 소각로, 저 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전자유도 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기 타의 노와 오븐, 관련부품
1116b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기체여과기와 청정기, 관련부품

1117		냄새방지 장비	
1117a	29194*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	액체 또는 분말의 살포기 및 부 분품
112		폐수관리 기기 및 제품 제조업	
1211		공기주입 시스템	
1211a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슬러지 이송
1211b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진공펌프, 냉장설비용 압축기, 예 인용의 바퀴달린 사시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기타 기체 압축기 및 후드, 관련 부분품
1122		화학적 복구 시스템	
1122a	07111*	석회석 광업	석회석용제
1122b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 업	염소, 고체수산화나트륨, 액체수 산화나트륨(소다 또는 액상소다),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 슘, 수산화알루미늄, 아황산나트 륨, 기타 아황산염, 포스포네이트 (하이포아인산염) 및 포스포네이 트(아인산염), 인산염, 인산나트 륨, 인산칼륨, 인산칼슘
1122c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산화망간(일산화망간, 이산화망 간), 일산화연
1122d	2020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 조업	무수암모니아
1122e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활성탄, 폐수처리용 미생물처리 제
1122f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소석회와 수경성석회
1122g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물의 여과 및 청정용 기기, 액체 여과용 기타 기기, 관련부품
1123		기름 및 물 분리기	
1123a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물의 여과 및 청정용 기기, 액체 여과용 기타 기기(폐수처리기기), 관련부품
1123b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 조업	원심분리기, 관련부품, (폐액용제 프레온 회수기)
1124		선별기, 여과기	
1124a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 업	이온교환수지컬럼

1124b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물의 여과 및 청정용 기기, 액체 여과용 기타 기기, 관련부품
1125		오수 처리기	
1125a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기타 섬유제의 파일 및 셔닐 직물
1125b	25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정화조
1125c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용적이 300리터이상의 탱크 및 통
1125d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용적이 300리터이하인 탱크 및 통
1125e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수력터빈, 관련부품
1125f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폐기물소각로: 기타 비전기식 노 및 소각로,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기타의 노와 오븐, 관련부품
1125g	29191	일반저울 제조업	최대측정용량 5000킬로그램 이하의 중량측정기기 및 기타 중량 측정기기
1125h	29194*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액체 또는 분말의 살포기 부분품
1126		수질오염조절기기, 폐수재활용기기	
1126a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수질오염 조절기기
1127		물 취급기기	
1127a	2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주철제 주물제품
1127b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1127c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용적형 및 수지식 펌프, 기타의 용적형 왕복펌프, 기타의 용적형 회전펌프, 기타의 원심펌프, 기타 펌프
1127d	29130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감압밸브, 체크밸브, 안전밸브, 기타의 탭·코크·밸브
1127e	27213*	물질검사·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용 검사기기, 압력의 측정 또는 검사기기
113		폐기물 관리기기 제조업	

1131		유해폐기물 보관 및 처리 기기	
1131a	23329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기타의 시멘트 및 콘크리트 제품
1131b	2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연제의 기타 제품
1131c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유리화기기
1131d	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레이저기기
1132		폐기물 수집기기	
1132a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 가정용품(화장실용품), 쓰레기통의 플라스틱제 안감 수지식 비, 기계 및 기구의 부품이 되는 브러쉬, 기계식 바닥청소기
1132b	33994	비 및 솔 제조업	
1133		폐기물 처리 기기	
1133a	22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폴리프로필렌 판
1133b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폐기물압축기, 음식물처리기/건조기, 관련부품(탈취필터)
1133c	30122	화물자동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폐기물처리 차량, 청소차량
1134		폐기물 취급장비	
1134a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폐기물 취급장비
1134b	292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산업용 폐기물 압축기, 건조기, 탈수기, 탈취장비
1135		폐기물 분리기기	
1135a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자석식 분리기
1135b	292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폐기물선별기(중력,부력,공기등)
1136		재활용 장비	
1136a	29192	포장기 및 용기세척기 제조업	용기를 세정 또는 건조하는 기기
1136b	2924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흙, 돌, 모래 등을 반죽 또는 혼합하는 기기
1136c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혼합 및 파쇄하는 기타 기기,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타기기(폐기물 재활용기기-음식쓰레기발효기, 폐전선절단 및 동회수기기)
1136d	292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건조기(열식, 산업용), 물질건조기(농산물제외), 폐기물처리기기

1137		소각로	
1137a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폐기물소각로: 기타 비전기식 노 및 소각로,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기타의 노와 오븐, 관련 부품
114		토양, 지표수, 지하수 개선 및 정화기기 제조업	
1141		정화기기	
1141a	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레이저기기(측정용)
1141b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1141c	39009*	기타 환경정화 및 복원업	
1142		수처리 기기	
1142a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고유기능을 갖는 기타 전기기기 (이온정수기 등), 오존발생기(전기식)
1142b	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계면활성화학물질(세척제가 아닌 것), 기름유출정화기기
1142c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1142d	39009*	기타 환경정화 및 복원업	
115		소음 및 진동 저감장치 제조업	
1151		소음기	
1151a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식 소음감쇄기
1151b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불꽃정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부품, 디젤(세미디젤) 엔진 전용부품
1151c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1151d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자동차 소음기와 배기관
1152		진동방지 시스템	
1152a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진동방지장치
1152b	292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1153		방음벽	
1153a	25113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금속재 방음벽
1153b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재 방음벽
1153c	23326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콘크리트재 방음벽
116		환경감시, 분석 및 측정장치 제조업	

1161		측정 및 감시기기	
1161a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1161b	27213*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온도계와 고온계, 액체비중계·기압계·습도계 등, 액체 또는 기체를 측정하는 기타기기 및 관련부품, 가스 또는 매연분석용 기기, 크로마토그래프, 분광계, 노출계, 광선을 이용하는 기타기기, 물리 또는 화학적분석용의 기타기기, 마이크로토름을 포함한 관련부품, 기타의 광학식기기,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기기, 자동차 배기가스 분석기, 소음 및 진동측정기
1161c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매노우스타트, 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자동조절 및 제어기기, 기타 자동조절 및 제어기기
1162		공정제어기기	
1162a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환경조절 제어반
1162b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온도자동조정용 기기
1162c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환경조절 시스템기기(폐수처리 제어장비등)
12		청정제품 제조업	
121		청정 및 자원효율 제품 제조업	
1211		청정 및 자원효율 제품 제조업	
1211a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 제조업	수탄대체물질
1211b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과산화수소
1211c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수성매질에 분산된 페인트와 바니쉬
1211d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물기저의 접착제
1211e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프레온(CFC) 대체물질
1211f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이중외피의 기름탱커
1211g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저소음 압축기

1211h	292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13		자원관리 관련 제조업	
131		발전, 수도사업 및 에너지 보존 관련업	
1311		물 공급 관련업	
1311a	11202	생수 생산업	미네랄 워터
1311b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염소, 증류수 또는 전도된 물
1311c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이온교환수지(중합체)
1311d	36010	생활용수 공급업	정수장,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
1311e	36020	산업용수 공급업	공업용수, 상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
1312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업	
1312a	11121	주정 제조업	에탄올
1312b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메탄올
1312c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풍차, 풍력터빈
1312d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즉시식 또는 저장식의 물가열기(비전기식의 것), 태양열 집열 가열장치
1312e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1312f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재생에너지발전 세트, 바이오매스 포함
1312g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업	광전지를 포함한 광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1312h	35111*	원자력 발전업	
1312i	35112*	수력 발전업	수력, 소수력
1312j	35113*	화력 발전업	바이오매스(목재, 폐기물, 하수오니 등)
1312k	35119*	기타 발전업	태양력, 풍력, 조력, 지열 발전업
1313		열 및 에너지 보존 및 관리 관련 제조업	
1313a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촉매제
1313b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기타유리섬유제품
1313c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니트
1313d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전기 제조업	폐열 보일러

		업	
1313e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기름 및 기체연료외의 연료이용 버너
1313f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열펌프
1313g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열교환기 및 관련부품
1313h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형광램프(열 음극형의 것)
1313i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업	태양전지
1313j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기체 및 액체용 적산계기
1313k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온도자동조정용 기기
1313l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전기 자동차, 수소, 하이브리드, 태양광, 천연가스 자동차
1313m	35111*	원자력 발전업	
1313n	35112*	수력 발전업	
1313o	35113*	화력 발전업	
1313p	35119*	기타 발전업	지역 열병합 발전소, 태양력, 풍력, 조력, 지열 발전업
132		재생재료 및 재활용제품 제조업	
1321		재생유지 및 사료 제조업	
1321a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재생유지, 정제안된 동물유재생
1321b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음식찌꺼기를 이용한 사료
1322		직물 및 의복제품 제조업	
1322a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재생직물
1323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1323a	17110	펄프 제조업	고지를 이용한 펄프제조
1324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324a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재생윤활유, 재생그리스 제조
1324b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재생유류 정제품, 석유아스팔트 물질 제조
1325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325a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폐염산, 폐유기용제 등 화학물질 재생
1325b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재생 벤졸, 피치
1325c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폐수탄
1325d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재생 유기화합물

1325e	20121	산업용 가스제조업	재생가스
1325f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재생무기화합물
1325g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재생산화아연, 니켈 등
1325h	2030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폐플라스틱 이용
1325i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재활용 유지 및 부산물이용
1325j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라이온 섬유, 알기네이트 섬유
132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326a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고무타이어재생용캐벌렉스트립
1326b	22112	타이어 재생업	재생타이어
1326c	2219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기타 재생고무제품
1326d	22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재생 필름, 시트
1326e	22250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재생 우레탄, 스폰지 등
1327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1327a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폐유리를 이용한 건축용, 산업용 유리 제조
1327b	23199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재활용 유리제품(장난감, 비드 등)
1328		금속제품 제조업	
1328a	24111	제철업	철스크랩가공품
1328b	24112	제강업	철스크랩가공품
1328c	24113	합금철 제조업	철스크랩가공품
1328d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철스크랩가공품
1328e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비철금속스크랩가공품
1328f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비철금속스크랩가공품
1328g	24213	연(납)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비철금속스크랩가공품
1328h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비철금속스크랩가공품
1329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329a	38301*	금속원료 재생업	재활용 제품을 이용한 원료 생산
1329b	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	재활용 제품을 이용한 원료 생산
2		환경관련 건설업	
24		오염관리 관련 건설업	
241		대기오염 통제관련 건설업	
2411		대기오염통제관련 건설업	
2411a	412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공사

		건설업	
242		오폐수관리관련 건설업	
2421		오폐수관리관련 건설업	
2421a	41223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공사업	하수로 건설
2421b	412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분뇨처리 시설공사
2421c	42201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건물하수시설공사, 환기시설공사 등
2421d	42204	소방시설 공사업	
243		폐기물 관련시설 건설업	
2431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업	
2431a	412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폐기물선별시설 설치공사, 폐기물소각장(고형 용해) 설치공사
244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건설업	
2441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건설업	
2441a	412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소음방지시설 설치공사
2441b	42203	방음 및 내화공사업	방음공사
25		자원관리 관련 건설업	
251		자원관리 관련 건설업	
2511		자원관리 관련 건설업	
2511a	41226	조경건설업	녹지조성공사, 생태환경 조성공사 등
2511b	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급배수관, 파이프라인공사, 상수도 및 중수로 시설 공사 등
2511c	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공사업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물질의 판매
2511d	41223*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공사업	
3		환경관련 유통업	
36		오염관리 관련 유통업	
361		폐기물 관리관련 유통업	
3611		환경 관련 기계장비 임대업	
3611a	6931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폐기물 취급 건설장비
3611b	69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폐기물 취급 기계장비
37		자원관리 관련 유통업	
371		재활용제품 유통업	
3711		재활용 제품 도매업	

3711a	46791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재생용 금속, 비금속, 플라스틱, 고섬유, 고무, 고지 수집 및 판매
3712		재활용 제품 소매업	
3712a	47861	중고가구 소매업	사무용가구, 가정용가구 소매
3712b	47862	중고 가전제품 소매업	중고 냉장고, 밥솥 등 소매
3712c	47869	기타 중고상품 소매업	중고악기 등 소매
4		환경관련 서비스업	
48		오염관리 관련 서비스업	
481		대기오염 통제관련 서비스업	
4811		대기오염통제관련 서비스업	
4811a	84213*	환경행정	대기오염방지 관련 환경행정
4811b	94931*	환경운동단체	대기오염방지활동
482		폐수관리 관련 서비스업	
4821		폐수관리관련 서비스업	
4821a	37011	하수처리업	하수처리(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사업단위 포함), 하수 펌프장, 하수도관시설운영
4821b	37021	분뇨처리업	분뇨처리(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사업단위 포함), 정화조청소업, 화장실운영
4821c	37022	축산분뇨 처리업	축산분뇨수집 및 운반, 축산폐수 공용처리시설, 동물사체 수집 및 처리
4821d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821e	37012*	폐수 처리업	오폐수 처리업(수집운반 포함)
483		폐기물 관리관련 서비스업	
4831		유해폐기물관리 관련 서비스업	
4831a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위험 폐기물 운반, 지정폐기물수집운반(폐석면, 폐합성고무, 슬래그(광재), 분진 등), 병원폐기물수집운반
4831b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831c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유해폐기물, 의료폐기물처리
4831d	38240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4832		일반폐기물관리 관련 서비스업	
4832a	38110	지정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일반 폐기물 운반, 무해고체폐기물수집운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4832b	38130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
4832c	38210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비위험 일반 폐기물 처리, 무해

			폐기물소각로운영, 무해폐기물매립장운영
4832d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건축관련폐기물(건물 해체물 등)의 처리시설을 운영
4832e	74212*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거리청소서비스, 도로청소서비스
484		토양, 지표수, 지하수 청소 및 개선관련 서비스업	
4841		토양, 지표수, 지하수 청소 및 개선관련 서비스업	
4841a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4841b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841c	74212*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탱크청소, 상하수도관 청소
485		환경연구개발 관련 서비스업	
4851		환경연구개발 관련 서비스업	
4851a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토양학, 지구과학, 기상학 등
4851b	70121	전기·전자공학연구개발업	환경관련 연구개발, 환경공학연구
4851c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486		환경관련 계약 및 엔지니어링	
4861		기획 및 설계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861a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관련상담 및 자문, 환경 및 위생엔지니어링
4862		환경영향평가 및 감사	
4862a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영향평가, 환경부지평가
4863		법무관련 환경 서비스업	
4863a	71101	변호사업	환경관련 법무서비스
4863b	71102	변리사업	환경관련 특허서비스
487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관련 서비스업	
4871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관련 서비스업	
4871a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대기오염 측정분석, 환경요인 측정분석
488		교육, 훈련, 정보관련 서비스업	
4881		교육, 훈련, 정보관련 서비스업	
4881a	85229	기타 기술 및 직업고등학교	환경 관련 교육
4881b	85303	대학원	환경대학원
4881c	8565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환경 관련 교육
49		자원관리 관련 서비스업	

491		자원관리 관련 서비스업	
4911		자원관리 관련 농림어업 서비스업	
4911a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수수료에 의한 작물재배서비스
4911b	01420	축산관련 서비스업	인공수정, 품종개량 등
4911c	02012	육림업	식목 및 보호활동
4911d	02040	임업관련 서비스업	산불방지 및 병충해 방지 등 서비스
4911e	03213	수산물 부화 및 중요생산업	어족보존을 위한 부화 및 중요 생산서비스
4911f	03220	어업관련서비스업	어족보호서비스
4911g	7430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도로변, 공원 등 조경식재 파종 및 유지관리
4911h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천연기념물 등 희귀 동식물 관리
4911i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자연공원 및 야생생물 보존
4912		자연재해 및 기타 자원관리 서비스업	
4912a	08090*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광산배수 서비스
4912b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4912c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광물채굴 목적 이외의 지질조사, 지구물리학적 조사 및 탐사 서비스
4912d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상서비스
4912e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플랜트시설 유지관리
4912f	84213*	환경행정	자연방재 관련 행정서비스업
4912g	73100	수의업	희귀동물 치료 및 실험서비스
4912h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천연기념물 등 희귀 동식물 관리
4912i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자연공원및야생생물보존
4912j	94931*	환경운동단체	생태, 자원관리 관련 환경보호단체

표 24. 환경산업특수분류

3. 제도 운영프로세스 개발

3.1 제도운영체계

○ 제도명 : 경기도 우수환경기업(G-BEST)지정

○ 제도목적 : 도내 환경기업은 전국 최다로(3,500여개, 21%) 다양한 기술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로 자금·정보력 등 열세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우수한 환경산업분야 중소기업을 지정하여 기업이 환경시장에서 경쟁하여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

○ 제도개요

'환경산업분야 우수중소기업'이란 창업 이후 일정 기간(2년) 이상이 경과한 중소기업 중에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산업' 영위기업
-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환경산업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 도내 환경산업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거나, 수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환경기업

'환경산업분야 우수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해 경기도지사가

- 전문기관의 평가와 '환경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인증서와 현판을 부여하고,
- 지정항목에 따라 각종 지원·육성정책 및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 제도운영안(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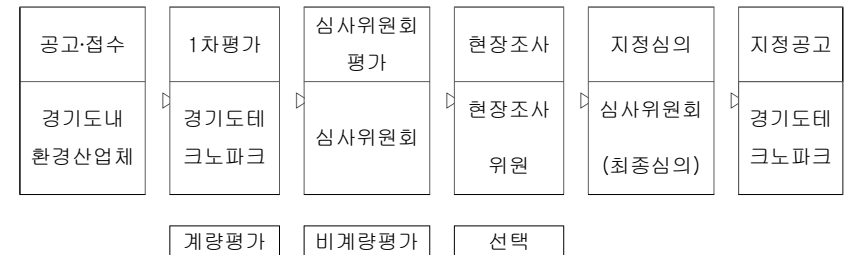


표 25. 경기도 우수환경기업 제도운영 프로세스

○ 대상기업 정의

업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산업' 영위기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환경산업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사업실적이 우수하거나 보유기술 및 서비스가 뛰어난 기업
업력	창업 이후 일정 기간(2년) 이상이 경과한 기업

그림 10. 경기도 우수환경기업 대상기업

※ 검토 의견 : 청정제품제조업의 범위가 제한적임
 신재생에너지(해수담수화 등) 청정제품, 에너지화 포함 검토 要

3.2 평가지표 선정

- 경기도 우수환경기업을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기존 평가방식과 경기도 내의 기업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를 선정하도록 함
- 주요지표로는 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지정, 경기도 경기유망중소기업, 중기청 수출유망중소기업, 경기도 경기일자리우수기업, 녹색산업인증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함
 - 기타제도 중 환경부 녹색기업인증, 벤처 및 이노비즈인증등의 내부관련지표는 제외함

구분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반영 수	우수환경 산업체 지정(환경부)	경기유망 중기(경기도)	수출유망 중소기업(중기청) - 제조	수출유망 중소기업(중기청) - 서비스	경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경기도)
경영 평가	매출액	◦ 매출규모	2	100억	50억			
경영 평가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4	30%	9.6%이상	20% 이상		22.79%
경영 평가	성장성	◦ 총자산증가율	2		5.77%이상			19.20%

경영 평가	수익성	◦ 매출액세전순이익률	1		3.9%이상			
경영 평가	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률	4	20%	5.1%이상	9% 이상		5.10%
경영 평가	안정성	◦ 부채비율	4	100%미만	154.34 미만	80% 미만		155.57
경영 평가	안정성	◦ 유동비율	2		124.84% 이상	150% 이상		
경영 평가	생산성	◦ 부가가치	2		12억이상			6억이상
경영 평가	생산성	◦ 총자본투자효율	2		24.87%이상			27.51
특성 평가	수출 실적	◦ 수출실적	2			100만불 ~ 200만불 미만		5천만원
특성 평가	수출 실적	◦ 수출액비율	3	15%	5%	10만불이상/100%		
특성 평가	수출 실적	◦ 해외마케팅 투자	1			4%이상(5), 4%미만(4), 3%미만(3), 2%미만(2), 1%미만(1)		
특성 평가	수출 실적	◦ 수출준비도	1			◦관련지표		
특성 평가	수출 실적	◦ 해외시장 개척활동	1			1회(1점), 2회(2점), 3회(3점), 4회(4점), 5회 이상(5점)		
특성 평가	고용 실적	◦ 상시고용 인원	3	40인이상	100명			50명 이상
특성 평가	고용 실적	◦ 상시고용인원 증가	3	20%이상	31명			25% 이상
특성 평가	고용 실적	◦ 고용창출 의지 및 가능성	2	○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보유(5점), 자체 연구개발조직·인력 보유(3점)		
특성 평가	고용 실적	◦ 전문인력의 비율	1			[5점]70% 이상 [4점] 50%이상 [3점]30%이상, [2점] 10% 이상 [1점] 10% 미만		
특성 평가	고용 실적	◦ 전문인력의 근속연수	2			[5점]70% 이상, [4점] 50%이상, [3점]30%이상, [2점] 10% 이상, [1점] 10% 미만	이직률(2%)	
특성 평가	고용 실적	◦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비용	2			[5점]10% 이상 [4점] 5%이상 [3점]3%이상, [2점] 1% 이상 [1점] 1% 미만	자기계발(복지)	
특성 평가	서비스 제공능력	◦ 고객정보 및 지식관리	1			경토기준		
특성 평가	서비스 제공능력	◦ 서비스 차별성	1			경토기준		
특성 평가	환경실적	◦ 환경분야 추진실적	1	95%이상				
기술	기술화	◦	4	9%	5%	5%		3%

평가		기술개발투자율						
기술 평가	기술화	◦ 기술개발투자금액	2		2억원			5천만원
기술 평가	경쟁력	◦ 지식재산권	2	0			수출품목에 대한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5점),	
기술 평가	기술 품질 관리 수준	◦ 국내외 규격인증	2		0		인증규격 개수당 1점씩 가산(5점)	
기술 평가	기술 혁신 노력	◦ 연관기술 인증	2		0		수출품목의 인증(5점),	
시장 평가	실용화	◦ 시장진입 단계	1	0				
시장 평가	가능성	◦ 주력 및 관련시장 성장성	1	0				
시장 평가	시장성	◦ 국내외 고정거래처	1	0				
일반 평가	일반 사항	◦ 사업영위기간(공고일현재 2년이상)	1		0			
일반 평가	일반 사항	◦ 본사+공장이 경기도 소재	1		0			
일반 평가	일반 사항	◦ 도지사이상수상(3년)	1		0			
일반 평가	일반 사항	◦ 시군유관기관수상(3년)	1		0			
일반 평가	직장복지 및 후생수준	◦ 직원능력개발 지원	1		0			
일반 평가	직장복지 및 후생수준	◦ 취미생활 지원	1		0			
가점		◦ 가점	2		0	0	0	0

표 26. 평가 항목별 지표 분류

- 분류별 평가지표에 대해 세부분석을 통해 경기도 평가지표를 선정하도록 함
- 지표 세부분석은 측정가능여부, 환경산업가중화, 제조업기준, 유통/서비스업 기준, 건설업,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항목으로 분류함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산출방법	반영 수	측정가능여부	환경산업가중화	제조업기준	유통/서비스업	건설업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선정지표
경영 평가	매출액	◦ 매출규모	(매출액)	2	계량	1	1	1	1	
경영 평가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전기매출액	4	계량	1	1	1	1	*
경영 평가	성장성	◦ 총자산증가율		2	계량	0				
경영 평가	수익성	◦ 매출액세전순이익률		1	계량	0				
경영 평가	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100)/매출액	4	계량	1	1	1	1	*
경영 평가	안정성	◦ 부채비율	(부채총계*100)/자본총계	4	계량	1	1	1	1	*
경영 평가	안정성	◦ 유동비율	(유동자산*100)/유동부채	2	계량	0	1	1	1	*
경영 평가	생산성	◦ 부가가치	(당기부가가치 규모)	2	계량	0	1	1	1	*
경영 평가	생산성	◦ 총자본투자효율		2	계량	0				
특성 평가	수출실적	◦ 수출실적		2	계량	0				*
특성 평가	수출실적	◦ 수출액비율	직수출 1만불 이하인 경우	3	계량	1	1		1	*
특성 평가	수출실적	◦ 해외마케팅 투자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해외마케팅 비용의 지출	1	계량	0				
특성 평가	수출실적	◦ 수출준비도	항목당1점	1	계량	0	1		1	*
특성 평가	수출실적	◦ 해외시장 개척활동	최근 2년 내 시장개척단 파견 또는 해외전시회 참가	1	계량	0				

특성 평가	고용실적	◦ 상시고용 인원	평균 근로자수	3	계량	1	1	1	1	*
특성 평가	고용실적	◦ 상시고용인원 증가	(당기 평균근로자수 - 전기 평균근로자수) / 전기 평균근로자수 ×100	3	계량	1	1	1	1	*
특성 평가	고용실적	◦ 고용창출 의지 및 가능성	연구개발조직 및 인력	2	계량	1	1	1	1	*
특성 평가	고용실적	◦ 전문인력의 비율	전체 전문인력의 총 수/전체 종업원의 총 수	1	계량	0		1		*
특성 평가	고용실적	◦ 전문인력의 근속연수	전체 전문인력이 해당 기업에서 일한 연수/전체 종업원이 해당기업에서 일한 연수	2	계량	0		1		*
특성 평가	고용실적	◦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비용	전년도 교육훈련비/전년도 총매출액	2	계량	0		1		*
특성 평가	서비스제공능력	◦ 고객정보 및 지식관리	서비스 개발 또는 제공을 위한 고객정보 보유 수준, 경영활동에의 활용 정도, 고객정보 분석 및 평가 등의 지식관리 활동을 중심으로 동사의 고객정보 및	1	비계량	0				

			지식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변동가능성 등을 활용하고 있는가							
특성 평가	서비스제공능력	◦ 서비스 차별성	기존서비스에 비하여독창성, 동사의서비스 가모방용이성, 가격경쟁력, 납기준수등 서비스 차별성은 있는가	1	비계량	0		1		*
특성 평가	환경실적	◦ 환경분야 추진실적		1	계량	1	1	1	1	*
기술 평가	기술화	◦ 기술개발투자율	(연구개발비/매출액)*100	4	계량	1	1	1	1	*
기술 평가	기술화	◦ 기술개발투자금액	2년평균	2	계량	0				
기술 평가	경쟁력	◦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2	계량	1	1	1	1	*
기술 평가	기술품질 관리수준	◦ 국내외 규격인증	국내외 규격인증	2	비계량	0				가점
기술 평가	기술혁신 노력	◦ 연관기술 인증	연관기술의 인증	2	비계량	0				가점
시장 평가	실용화	◦ 시장진입 단계		1	비계량	1	1	1	1	*
시장 평가	가능성	◦ 주력 및 관련시장 성장성		1	비계량	1	1	1	1	*
시장 평가	시장성	◦ 국내외 고정거래처		1	비계량	1				
일반 평가	일반사항	◦ 사업영위기간(공고일현재 2년이상)		1	비계량	0				
일반 평가	일반사항	◦ 본사+공장이 경기도 소재		1	비계량	0				

일반 평가	일반사항	◦ 도시사이상수상(3년)		1	비계량	0	1	1	1	*
일반 평가	일반사항	◦ 시군유관기관수상(3년)		1	비계량	0	1	1	1	*
일반 평가	직장복지 및후생수준	◦ 직원능력개발 지원		1	비계량	0				
일반 평가	직장복지 및후생수준	◦취미생활지원		1	비계량	0				
가점		◦ 가점		2	비계량	0	1	1	1	*

표 27. 분류별 평가지표에 대해 세부분석

3.3 평가항목 및 점수화

○ 업종유형별로 평가지표 항목 세분화

- 제조/건설업과 유통/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개발
- 측정가능여부에 따라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분
- 1차평가는 계량지표화로 2차평가는 비계량지표로 구분하여 항목 개발

○ 업종유형별 평가지표 개발

- 제조/건설업 평가지표는 계량 10개, 비계량 6개로 구성(100점만점)
- 유통/서비스업 평가지표는 계량 10개, 비계량 5개로 구성(100점 만점)

심사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산출방법	배점	측정가능 여부
1차심사 (60점)	경영 일반 (20점)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100/전기매출액	5	계량
		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100)/매출액	5	계량
		안정성	◦ 부채비율	(부채총계*100)/자본총계	5	계량
		활동성	◦ 자기자본회전율	(당기매출액/당기자기자본)*100	5	계량
	유망 성 (20점)	수출실적	◦ 수출액비율	(당기수출액/당기매출액)*100	10	계량
		고용실적	◦ 상시고용 인원	평균 근로자수	5	계량
		고용실적	◦ 환경분야 상시고용인원 증가	(당기 평균근로자수 - 전기 평균근로자수) / 전기 평균근로자수*100	5	계량
	환경 산업 개발 실적 (20점)	환경실적	◦ 환경분야 추진실적을	(당기 환경분야 매출액/당기매출액)*100	10	계량
		기술화	◦ 기술개발투자율	(연구개발비/매출액)*100	5	계량
		경쟁력	◦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 및 실용신안 등)	5	계량

표 28. 제조/건설업 1차평가(계량)

심사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산출방법	배점	측정가능 여부
2차심사 (40점)	환경 사업 비즈니스 모델 (15점)	비즈니스 전략	◦ 환경산업 전략	기술및사업확대에대한경영진 의지 리스크관리등의경영활동평가 국내외고객확대에대한전망등	10	비계량
		시장확대 전략	◦ 주력산업 시장 성장가능성	주력산업의시장현황에따른성 장현황 관련시장성장가능성	5	비계량
	환경 제품 기술 성 (10점)	기술 전략	◦ 제품 보호성	주력제품에대한지식재산권포 트폴리오적합성 제품의다양성및기술네트워크 보유	10	비계량
		환경 산업 성장	수출 전략	◦ 주력제품 시장진출 전략	해외시장개척활동여부 해외진출가능성	5

성 (10점)	고용창출 전략	◦ 신규고용창출 가능성	신규고용창출에대한의미및전 략화 사업확대등에따른고용확대가 가능성등	5	비계량
기업 지속 가능 성 (5점)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지역연계환경프로그램수행여 부 사회적책임역할가능성	5	비계량

표 29. 제조/건설업 2차평가(비계량)

심사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산출방법	배점	측정가능 여부
1차심사 (60점)	경영일 반 (20점)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100/전기매출액	5	계량
		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100)/매출액	5	계량
		안정성	◦ 부채비율	(부채총계*100)/자본총계	5	계량
		안정성	◦ 유동비율	(유동자산*100)/유동부채	5	계량
	유망성 (20점)	서비스 기술	◦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비용	전년도 교육훈련비/전년도 총매출액	10	계량
		고용실적	◦ 환경분야 상시고용인원 증가	(당기 평균근로자수 - 전기 평균근로자수) / 전기 평균근로자수*100	5	계량
		고용실적	◦ 전문인력의 비율	전체 전문인력의 총 수/전체 종업원의 총 수	5	계량
	환경산 업개발 실적 (20점)	환경실적	◦ 환경분야 추진실적을	(당기 환경분야 매출액/당기매출액)*100	10	계량
		기술화	◦ 기술개발투자율	(연구개발비/매출액)*100	5	계량
		경쟁력	◦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 및 실용신안 등)	5	계량

표 30. 유통/서비스업 1차평가(계량)

심사	구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산출방법	배점	측정가능 여부
2차심사 (40점)	환경사업 비즈니스모델 (15점)	비즈니스 전략	◦ 환경산업 전략	기술및사업확대에대한경영진의 지 리스크관리등의경영활동평가 국내외고객확대에대한전망등	10	비계량
		시장 확대 전략	◦ 주력산업 시장 성장가능성	주력산업의시장현황에따른성장 현황 관련시장성장가능성	5	비계량
	환경제품 기술성 (10점)	서비스제 능력	◦ 서비스 경쟁력	기존서비스에비하여독창성,동사의 서비스가모방용이성,가격경쟁 력,납기준수등 서비스 차별화 전략 지식재산권포드폴리오적합성	10	비계량
	환경산업 성장성 (10점)	고용 창출 전략	◦ 신규고용창출 가능성	신규고용창출에대한지및전략 화 사업확대등에따른고용확대가능 성등	10	비계량
기업 지속가능성 (5점)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지역연계환경프로그램수행여부 사회적책임역할가능성	5	비계량	

표 31. 유통/서비스업 2차평가(비계량)

3.4 평가표 개발

○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표 개발

- 업종 구분에 따라 평가점수 재배치
-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하여 지정제도의 효과성 향상

평가지표	우수환경산업 체지정(환경부)	경기유망중기 (경기도)	수출유망중소 기업(중기청)	경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경기도)
◦ 매출규모	100억	50억		
◦ 매출액증가율	30%	9.6%이상	20% 이상	22.79%
◦ 매출액영업이익률	20%	5.1%이상	9% 이상	5.10%
◦ 부채비율	100%미만	154.34 미만	80% 미만	155.57

◦ 유동비율		124.84% 이상	150% 이상	
◦ 부가가치		12억이상		6억이상
◦ 수출액비율	15%	5%	10만불이상/100%	
◦ 수출준비도			관련항목	
◦ 상시고용 인원	40인 이상	100명		50명 이상
◦ 상시고용인원 증가	20%이상	31명		25% 이상
◦ 고용창출 의지 및 연구인력	○		전담/비전담	
◦ 전문인력의 비율			70%이상	
◦ 전문인력의근속연수			70%이상	이직률(2%)
◦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비용			10%이상	자기계발(복지)
◦ 서비스 경쟁력			검토기준	
◦ 환경분야 추진실적률	95%이상			
◦ 기술개발투자율	9%	5%	5%	3%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 시장진입 단계	○			
◦ 관련시장 성장성	○			
◦ 도지사이상수상(3년)		○		
◦ 시군유관기관수상(3년)		○		
◦ 가정		○	가산항목	

표 32. 평가지표 점수표 분류

○ 업종별 평가표는 다음과 같음

- 경기도 중소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평가표 (제조업/건설업)
- 경기도 중소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평가표 (유통/서비스업)

※ 경기도 중소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평가표 (제조업/건설업)

대분류	항목	지표	측정 단위	점수	산출방식	점수화					
						a	b	c	d	e	
경영일반 (20점)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계량	5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100/전기매출액	20%이상					
	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률	계량	5	(영업이익*100)/매출액	9%이상					
	안정성	◦ 부채비율	계량	5	(부채총계*100)/자본총계	80%미만	Ratio 평가 →				
	활동성	◦ 자기자본회전율	계량	5	(당기매출액/당기자기자본)*100	150%이상					
유망성 (20점)	수출실적	◦ 수출액비율	계량	10	(당기수출액/당기매출액)*100	15% 이상					
	고용실적	◦ 상시고용 인원	계량	5	당기 근로자수	40인 이상	30인 이상~40인 미만	2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이상~20인 미만	10인 미만	
	고용실적	◦ 상시고용인원 증가	계량	5	(당기 근로자수 - 전기 근로자수) / 전기 근로자수×100	20% 이상	Ratio 평가 →				
환경산업 개발실적 (20점)	환경실적	◦ 환경분야 주진실적율	계량	10	(당기 환경분야 매출액/당기매출액)*100	95% 이상	Ratio 평가 →				
	기술화	◦ 기술개발투자율	계량	5	(연구개발비/매출액)*100	9% 이상	5%이상~9%미만	3%이상~5%미만	2%이상~3%미만	2%미만	
	경쟁력	◦ 지식재산권	계량	5	산업재산권 (특허 및 실용신안 등)	(5) 산업재산권 3개이상 보유(수출품 포함)	(4) 산업재산권 3개이상 보유(수출품 미포함)	(3) 산업재산권 2개미만 보유(수출품 포함)	(2) 산업재산권 2개미만 보유(수출품 미포함)	(1)기타 산업재산권 및 특허 출원중	

그림 11. 제조/건설업 1차 평가표

대분류	항목	지표	측정 단위	점수	산출방식	점수화				
						a	b	c	d	e
환경사업 비즈니스모델 (15점)	비즈니스 전략	◦ 환경산업 전략	비계량	10	정성평가	기술 및 사업확대에 대한 경영진 의지 리스크 관리등의 경영활동 평가 국내외 고객 확대에 대한 전망등				
	시장확대 전략	◦ 주력산업 시장 성장가능성	비계량	5	정성평가	주력산업의 시장 현황에 따른 성장현황 관련시장 성장가능성				
환경제품 기술성 (10점)	기술 전략	◦ 제품 보호성	비계량	10	정성평가	주력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적합성 제품의 다양성 및 기술네트워크 보유				
환경산업 성장성 (10점)	수출 전략	◦ 주력제품 시장진출 전략	비계량	5	정성평가	해외시장 개척활동 여부 해외 진출 가능성				
	고용창출전략	◦ 신규고용창출 가능성	비계량	5	정성평가	신규고용창출에 대한 의지 및 전략화 사업 확대등에 따른 고용확대 가능성 등				
기업 지속가능성 (5점)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비계량	5	정성평가	지역연계 환경프로그램 수행여부 (지속성,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 사회적 책임 역할 가능성 (전략 및 향후계획 등 평가)				

그림 12. 제조/건설업 2차 평가표

※ 경기도 중소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평가표 (유통/서비스업)

대분류	분류	지표	측정 단위	점수	산출방식	점수화					
						a	b	c	d	e	
경영일반 (20점)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계량	5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100/전기매출액	20%이상					
	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률	계량	5	(영업이익*100)/매출액	5%이상					
	안정성	◦ 부채비율	계량	5	(부채총계*100)/자본총계	80%미만					
	안정성	◦ 유동비율	계량	5	(유동자산*100)/유동부채	150%이상					
유망성 (20점)	서비스 기술	◦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비용	계량	10	전년도 교육훈련비/전년도 총매출액	10% 이상	Ratio 평가				
	고용실적	◦ 상시고용인원 증가	계량	5	(당기 평균근로자수 - 전기 평균근로자수) / 전기 평균근로자수 *100	20% 이상					
	고용실적	◦ 전문인력의 비율	계량	5	전체 전문인력의 총 수/전체 종업원의 총 수	70% 이상					
환경산업 개발실적 (20점)	환경실적	◦ 환경분야 추진실적률	계량	10	(당기 환경분야 매출액/당기매출액)*100	95% 이상					
	기술화	◦ 기술개발투자율	계량	5	(연구개발비/매출액)*100	9% 이상	5%이상~9%미만	3%이상~5%미만	2%이상~3%미만	2%미만	
	경쟁력	◦ 지식재산권	계량	5	산업재산권 (특허 및 실용신안 등)	(5) 산업재산권 3개이상 보유(수출품 미포함)	(4) 산업재산권 3개이상 보유(수출품 미포함)	(3) 산업재산권 2개미만 보유(수출품 포함)	(2) 산업재산권 2개미만 보유(수출품 미포함)	(1)기타 산업재산권 및 특허 출원중	

그림 13. 유통/서비스업 1차 평가표

대분류	분류	지표	측정 단위	점수	산출방식	점수화				
						a	b	c	d	e
환경사업 비즈니스모델 (15점)	비즈니스 전략	◦ 환경산업 전략	비계량	10	정성평가	기술 및 사업확대에 대한 경영진 의지 리스크 관리등의 경영활동 평가 국내외 고객 확대에 대한 전망등				
	시장확대 전략	◦ 주력사업 시장 성장가능성	비계량	5	정성평가	주력사업의 시장 현황에 따른 성장현황 관련시장 성장가능성				
환경제품 기술성 (10점)	서비스제공능력	◦ 서비스 경쟁력	비계량	10	정성평가	기존 서비스에 비하여 특성성, 동사의 서비스가 모방 용이성, 가격 경쟁력, 납기 준수 등 서비스 차별화 전략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적합성				
환경산업 성장성 (10점)	고용창출전략	◦ 신규고용창출 가능성	비계량	10	정성평가	신규고용창출에 대한 의지 및 전략화 사업 확대등에 따른 고용 확대 가능성 등				
기업 지속가능성 (5점)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비계량	5	정성평가	지역연계 환경프로그램 수행여부 (지속성,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 사회적 책임 역할 가능성 (전략 및 향후계획 등 평가)				

그림 14. 유통/서비스업 2차 평가표

※ 경기도 중소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평가표 (제조/건설업 예시)

경기도 중소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평가표 (제조/건설업)									
업체명	주생산업체			기체여과기 제조업			총점	43.9	
주소	경기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사업자번호			139-81-19368		
(단위: 천원, 인)									
당기실적	당기매출액	당기환경분야매출액	당기영업이익	당기연구개발비	당기수출액	당기근로자수(연말)			
	50,058,584	49,958,584	4,031,629	320,633	15,017,575	137			
	당기자기자본총계	당기부채총계	당기개발비 (재무상태표)						
	10,812,975	49,354,782	0						
전기실적	전기매출액	전기근로자수(연말)	전기개발비 (재무상태표)						
	61,923,635	120	0						

대분류	분류	지표	측정 단위	점수	평가항목 및 내용					총점		
					43.9							
경영일반 (20점)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계량	5	당기매출액	전기매출액	매출액증가율	절대값	백점	계산결과	평점	실점값
		50,058,584	61,923,635	-19.2	20.0	5.0	-4.8	-4.8	0.0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계량	5	당기영업이익	당기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률	절대값	백점	계산결과	평점	실점값
		4,031,629	50,058,584	8.1	9.0	5.0	4.5	4.5	4.5			
안정성	부채비율	계량	5	당기부채총계	당기자기자본총계	부채비율	절대값	백점	계산결과	평점	실점값	
	49,354,782	10,812,975	456.4	80.0	5.0	0.9	0.9	0.9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계량	5	당기매출액	당기자기자본총계	자기자본회전율	절대값	백점	계산결과	평점	실점값	
	50,058,584	10,812,975	462.9	150.0	5.0	15.4	5.0	5.0				
유망성 (20점)	수출실적	수출액비율	계량	10	당기수출액	당기매출액	수출액비율	절대값	백점	계산결과	평점	실점값
		15,017,575	50,058,584	30.0	15.0	10.0	20.0	10.0	10.0			
	고용실적	상시고용 인원	계량	5	당기근로자수(연말)			백점	계산결과	평점	실점값	
		137	120	14.2	20.0	5.0	5.0	5.0	5.0			
고용실적	상시고용인원 증가	계량	5	당기근로자수(연말)	전기근로자수(연말)	증가율	절대값	백점	계산결과	평점	실점값	
	137	120	14.2	20.0	5.0	3.5	3.5	3.5				
환경산업 개발실적 (20점)	환경실적	환경분야 추진실적률	계량	10	당기환경분야매출액	당기매출액	환경분야실적률	절대값	백점	계산결과	평점	실점값
		49,958,584	50,058,584	99.8	95.0	10.0	10.5	10.0	10.0			
	기술화	기술개발투자율	계량	5	연구개발비	당기매출액	연구개발비율	업체평균	백점	계산결과	평점	실점값
		320,633	50,058,584	0.6	9.0	5.0	1.0	1.0	1.0			
경쟁력	지식재산권	계량	5	신사업재산권 여부	(5) 산업재산권 3개 이상 보유(수출물 포함)	(6) 산업재산권 2개 미만 보유(수출물 포함)	(7) 산업재산권 3개 이상 보유(수출물 포함)	(8) 산업재산권 2개 미만 보유(수출물 포함)	(9) 산업재산권 2개 미만 보유(수출물 포함)	(10) 산업재산권 2개 미만 보유(수출물 포함)	실점값	4

그림 15. 제조/건설업 지정 평가표 예시

※ 경기도 중소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평가표 (유통/서비스업 예시)

경기도 중소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평가표 (유통/서비스업)									
업체명	주생산업체			기체여과기 제조업			총점	-	
주소	경기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사업자번호			139-81-19368		
(단위: 천원, 인)									
당기실적	당기매출액	당기환경분야매출액	당기영업이익	당기연구개발비	당기수출액	당기근로자수(연말)	전문인력수		
	당기자기자본총계	당기부채총계	당기유동자산	당기유동부채	당기개발비 (재무상태표)				
전기실적	전기매출액	전기근로자수(연말)	전기개발비 (재무상태표)						

대분류	분류	지표	측정 단위	점수	평가항목 및 내용					총점		
					0.0							
경영일반 (20점)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계량	5	당기매출액	전기매출액	매출액증가율	절대값	백점	계산결과	평점	실점값
		0	0		20.0	5.0	#VALUE!	#VALUE!	0.0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계량	5	당기영업이익	당기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률	절대값	백점	계산결과	평점	실점값
		0	0		9.0	5.0	#VALUE!	#VALUE!	0.0			
안정성	부채비율	계량	5	당기부채총계	당기자기자본총계	부채비율	절대값	백점	계산결과	평점	실점값	
	0	0		80.0	5.0	#VALUE!	#VALUE!	0.0				
안정성	유동비율	계량	5	당기유동자산	당기유동부채	유동비율	절대값	백점	계산결과	평점	실점값	
	0	0		150.0	5.0	#VALUE!	#VALUE!	0.0				
유망성 (20점)	서비스기술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비율	계량	10	교육훈련비	당기매출액	교육훈련비율	절대값	백점	계산결과	평점	실점값
		0	0		10.0	10.0	#VALUE!	#VALUE!	0.0			
	고용실적	상시고용인원 증가	계량	5	당기근로자수(연말)	전기근로자수(연말)	증가율	절대값	백점	계산결과	평점	실점값
		0	0		20.0	5.0	#VALUE!	#VALUE!	0.0			
고용실적	전문인력인 비율	계량	5	전문인력수	당기근로자수(연말)	전문인력비율	절대값	백점	계산결과	평점	실점값	
	0	0		70.0	5.0	#VALUE!	#VALUE!	0.0				
환경산업 개발실적 (20점)	환경실적	환경분야 추진실적률	계량	10	당기환경분야매출액	당기매출액	환경분야실적률	절대값	백점	계산결과	평점	실점값
		0	0		95.0	10.0	#VALUE!	#VALUE!	0.0			
	기술화	기술개발투자율	계량	5	연구개발비	당기매출액	연구개발비율	업체평균	백점	계산결과	평점	실점값
		0	0		0.0	9.0	5.0	0.0	0.0			
경쟁력	지식재산권	계량	5	신사업재산권 여부	(5) 산업재산권 3개 이상 보유(수출물 포함)	(6) 산업재산권 3개 미만 보유(수출물 포함)	(7) 산업재산권 3개 이상 보유(수출물 포함)	(8) 산업재산권 2개 미만 보유(수출물 포함)	(9) 산업재산권 2개 미만 보유(수출물 포함)	(10) 산업재산권 2개 미만 보유(수출물 포함)	실점값	0

그림 16. 유통/서비스업 지정 평가표 예시

3.5 가점 기준

- 경기도내 환경산업 지정평가 가점기준
 - 항목별 동일 점수 부여 원칙
 - 환경관련 가점 기준 수립

항 목	가점
환경신기술(NET)인증기업 ISO14001인증,이노비즈인증기업,환경친화기업지정 세계일류상품선정,신지식인선정,기술관련상수상기업(장영실상등) 환경표지인증,녹색인증,탄소인증,녹색기업,우수재활용제품 경기도인증및지정사업참여기업(일자리,수출,유망중소기업만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부,중기청,산업부)성공종료기업(환경분야만해당) 도지사이상수상(기업대상,3년이내)	해당항목별 1점부여 (최대5점)

표 33. 경기도내 환경산업 지정평가 가점기준표

3.6 인센티브 및 활용방안

- 주요 제도의 인센티브 현황 파악을 통한 인센티브 적용방안 수립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의 경우 직접적인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 활용 중심인데 반해
 - 경기도청의 경우 다양한 조직의 연계혜택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함

환경부 지원내용
우수환경산업체
○경영컨설팅 지원 - 500만원 ○전문인력고용 지원 - 500만원 ○금융수수료 지원 - 500만원 ○해외마케팅 지원 - 500만원 ○국내외브랜드 홍보 ○금융지원 우선심사 - 금리0.5%감면 ○해외진출 지원 - 가점부여(2점) ○고용연계 연수지원 - 연300만원 ○기술개발 우선지원 - 가점부여(1점) ○전시마케팅 지원 - 부스임대료50%

표 34.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인센티브

구 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일자리 우수기업마크 기업 홍보물에 사용권 부여 ○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時 가정 부여 ○ 지방세관련 세무조사 면제(3년) ○ 도 물품구매시 우선권 부여(수의계약건) ○ 경기도 기술개발(전략산업-기업주도)사업 신청時 가정 부여(3점) ○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Home-Learn 온라인 과정 무료 수강지원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패밀리클러스터 단위사업 지원時 가정 부여(5%) ○ 경기벤처빌딩 입주 신청時 가정 부여(5%) ○ 인터넷무역 프론티어기업 신청時 가정 부여
경기 테크노파 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형인증 획득지원사업 신청時 가정 부여 ○ 기술닥터사업 신청時 우선지원
경기신용 보증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時 가정 부여(5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時 금리(0.5% 인하) 우대 ○ 보증평가 가산점 부여(신용평가시 1점) 및 보증요율 인하(0.2%)
한국표준 협회 경기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회원가입비(입회비 및 연회비) 할인(20%) ○ 한국표준협회 '으뜸이 마크' 사용료 할인(10~50%) ○ 최고경영자조찬회 연회비 할인(10%)
한국무역 협회 경기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기금 융자사업 신청時 가정 부여(5점)
한국무역 보험공사 경기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 ○ 수출보험료 할인
수원상공 회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가점 4~10점)

표 35.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센티브

구 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경기도 브랜드마크 기업홍보물에 사용권 부여 ○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 가정 부여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 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패밀리클러스터 단위사업 지원時 가정 부여(5%) ○ 경기도 인투인 인재채용지원(수수료 50%할인) ○ 경기벤처빌딩 입주 신청時 가정 부여(5%) ○ 인터넷무역 프론티어기업 신청時 가정 부여(4%)
경기 테크노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지원사업 지원 ○ 경기TP 투자마트 사업 선발시 가정부여(5점)
경기신용보 증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時 가정 부여(5점) ○ 보증평가 가산점 부여(신용평가시 1점) 및 보증요율 인하(0.2%)
한국표준협 회 경기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가입비 할인(20%) ○ 한국표준협회 '으뜸이 마크' 사용료 할인(50%)
한국무역협 회 경기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기금 융자사업 가정 부여(5점)
한국무역보 험공사 경기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최대 2배) ○ 수출보험료 할인(10%)
수원상공회 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해외통상촉진단 참가 지원(4%)

표 36.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센티브

구 분	환경산업분야 우수중소기업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산업 우수중소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경기도 브랜드마크 기업홍보물에 사용권 부여 ○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時 가정 부여 ○ 도 물품구매시 우선권 부여(수의계약건)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패밀리클러스터 단위사업 지원時 가정 부여(5%) ○ 경기도 인투인 인재채용지원(수수료 50%할인) ○ 경기벤처빌딩 입주 신청時 가정 부여(5%) ○ 인터넷무역 프론티어기업 신청時 가정 부여(4%)
경기 테크노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지원사업 지원

	○ 경기TP 투자마트 사업 선발시 가점부여(5점)
경기신용보증 재단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時 가점 부여(5점) ○ 보증평가 가산점 부여(신용평가시 1점) 및 보증요율 인하(0.2%)
한국표준협회 경기지부	○ 회원가입비 할인(20%) ○ 한국표준협회 '으뜸이 마크' 사용료 할인(50%)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	○ 무역기금 융자사업 가점 부여(5점)
한국무역보험 공사 경기지부	○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최대 2배) ○ 수출보험료 할인(10%)
수원상공회의소	○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해외통상촉진단 참가 지원(4%)

표 37. 경기도 환경산업분야 우수중소기업 인센티브 (案)

3.7 추진체계

○ 제도명 : 경기도 우수환경기업 G-BEST(Better Environmental Services & Technology) 지정제도

○ 추진체계

- 총괄기관, 운영기관(위탁기관)으로 구성하여 운영

구분	운영팀	운영기관	역할
총괄기관		경기도청	정책·재정지원, 법적근거 마련 및 개정
위탁기관	심사위원회		우수환경산업체 신청 및 심사 진행, 지원사업 추진
	제도운영팀	경기테크노파크	사업총괄관리,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담당
신청기업			지정신청

표 38. 경기도 지정제도 사업추진체계표

○ 사업추진체계

* 심사위원회 : 7명 내외(유관기관, 전문가, 공무원 등)

* 현장조사팀 : 3명 내외(도, 심사위원 등)

○ 지정지원범위

- 연간 지원업체 수 : 연 10개 지정

구분	개수	비율	기타제외시
제조업	1,494	42.3%	46.0%
기타	775	21.9%	0.0%
서비스업	548	15.5%	16.9%
유통업	428	12.1%	13.2%
건설업	290	8.2%	8.9%
총합계	3,535	100.0%	85.1%

표 39. 경기도내 환경산업체 현황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 (실적에 따라 1회 연장가능 / 최대 10년)

○ 지정절차 :



표 40. 경기도 우수환경기업 제도운영 프로세스

제 4 장 시범운영 및 향후계획

-
1. 경기도 우수환경기업 지정 시범운영
 2.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제4장 시범운영 및 향후 계획

1. 경기도 우수환경기업 지정 시범운영

1.1 시범운영 계획

○ 2013년 경기도 우수환경기업(G-BEST)지정 계획 공고(경기도 공고 2013-1134호)

※ 참조 경기도 공고 2013-1134호 (2013년 9월 11일)

경기도 공고 2013-1134호

2013년 경기도 우수환경기업(G-BEST)지정 계획 공고

경기도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우수 환경기업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우수 환경기업**을 선발, 지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정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9월 11일
경기도지사

1. 지정 개요

○ 경기 우수 환경기업 지정내용

- 제조·건설분야 7개 업체, 환경서비스분야 3개 업체 지정

분 야	업체 수	분야별 대상
제조건설 분야	7	시행공고일 현재 분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환경산업 특수분류 앞자리 1(제조) 또는 2(건설)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환경 유통·서비스 분야	3	시행공고일 현재 분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며 환경산업 특수분류 앞자리 3(유통) 또는 4(서비스)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덧붙임 4의 환경산업 특수분류 참고

○ 인센티브

- 지정서 및 현판교부

- 2014년도 기업맞춤형 사업 지원

※ 세부적인 사업은 추후 공고 예정

- 경기도 및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가점) 부여

- 선정 기업 언론매체 홍보

○ 추진일정

구 분		기간	내 용
추진계획	담당		
시행공고	도, 경기TP	공고일	• 일간지 보도자료, 홈페이지, 공문발송 등
신청접수	경기TP	공고일~10. 4	• 접수처 : 경기테크노파크 녹색성장지원팀
1차 ²⁾ 심사	심사준비	경기TP	10월 중순 • 신청자료 검증·보완 • 심사자료 준비 등
	실적심사	도, 경기TP	10월 말 • 기업이 작성한 실적평가표에 의한 심사 • 실무 담당자 검토 (도, 경기 TP) ※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 진행 • 선정 대상의 2배수 선정
2차 심사	위원회 심사	도, 경기TP	11월 초 • 선정심사위원회(6인 내외)구성 및 심사 • 최종선정
선정기업 공고	도, 경기TP	11월 중순	• 경기도 및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공고 • 보도자료 배포
지정서 및 현판수여	도, 경기TP	11월 말	• 지정서 및 현판 수여

2. 신청 자격

○ 제조·건설부문

- 시행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환경산업 특수분류 앞자리 1(제조) 또는 2(건설)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유통·서비스부문

- 시행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며 환경산업 특수분류 앞자리 3(유통) 또는 4(서비스)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신청제외 또는 선정 취소 사유》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휴업·폐업 중이거나,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허위로 지정서류를 제출한 기업

3. 접수 방법

○ 신청기간 : 2013. 9. 11 ~ 10. 4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426-901)경기도 안산시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녹색성장지원팀

○ 제출서류

- 분야별 신청서 및 부속서 각 8부

- * 실적 증명을 위한 증빙자료 각 1부

- * 모든 기업은 대표자 명의로 신청

-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www.gg.go.kr, www.gtp.or.kr 또는 www.green-all.kr)

○ 문의 : 경기테크노파크 (녹색성장지원팀)

TEL : 031-500-3086, 3038

* 이메일 : khw@gtp.or.kr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상 “2013년 경기도 우수환경기업 지정계획 공고” 참조

(www.gg.go.kr, www.gtp.or.kr 또는 www.green-all.kr)

【덧붙임 1】 신청서 양식

경기도 우수환경기업 지정 신청서

기업체명	한글 :	영문 :
대표자 성명	홈 페이지	
	회사E-mail	
설립 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담당부서	환경산업 특수분류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건설업
담당자 성명/직위		<input type="checkbox"/> 유통업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업
담당자 연락처	주 생산품	
담당자 휴대폰	담당자 E-mail	
소재지	본사	(우편번호:) 전화 FAX
	공장	(우편번호:) 전화 소유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대

- ※ 제출서류
1. 우수환경산업체 세부신청서 8부.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3.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서 사본 1부.
 4. 원천징수이행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사본 1부.
 5. 수출실적 확인서 사본 1부.
 6. 환경실적 증빙자료(계약서 등) 사본 1부.
 7. 지식재산 증빙자료(특허 등록증, 실용실안 등록증) 사본 1부.
 8. 가점 관련 증빙자료 사본 1부.
 6. 기타 증빙자료 사본 1부.
-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2013년 월 일
 신청업체명 : 대표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덧붙임 2】

우수환경기업지정 세부신청서

※ 제출하신 세부신청서는 지정심사 평가로 활용되며,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업 현황

(단위: 백만원)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이사	
	설립일	업 력	년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	
	소재지		
	업 태	주요기술:	
	종 목	주요생산품:	
	신청분야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유통업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업	

재무현황	'12년	자산총계		'11년	자산총계	
		자기자본			자기자본	
		유동자산			유동자산	
		부채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총계	
		부채비율	%		부채비율	%
		매출액			매출액	
		환경분야 매출액			환경분야 매출액	
		수출액			수출액	
		연구개발(투자)비			연구개발(투자)비	
		영업이익				

고용현황	'12년	평균근로자수		'11년	평균근로자수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일반현황	'12년	산업재산권	특허 () 건 실용신안 () 건
		경기도내 소재여부	<input type="checkbox"/> 분사 경기도 소재 <input type="checkbox"/> 공장 경기도 소재

<산식>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의 개발비 (당기)증가액 및 손익계산서의 연구개발비 합계액

2. 법인 연혁

설립 이후 주요 변경 연혁
 (설립, 상호 변경, 대표 변경, 합병·분할·상장내용, 수상 경험, 언론 보도 등)

3. 주요 환경산업부문 거래실적 (신청일 기준 전년도 환경산업부문 주요실적)

건수	품명	납품처	납품월	납품액
1				
2				
3				
·				
10				

* 주요한 실적(납품액·납품처)에 대해 10건만 기재
 * 증빙서류 제출 (계약서, 세금계산서, 국외 수출 시 수출실적증명서)

4. 지식재산권 현황

건수	명칭	권리자	등록일	등록번호
1				
2				
3				
·				
·				

* 증빙서류 제출 (특허 등록증, 실용신안 등록증)

5. 인증 및 수상 내역 (가점기준 해당사항만 기재)

건수	인증(수상)명	인증(수상) 기관	인증일	유효기간
1				
2				
3				
4				
5				

* 증빙서류 제출 (유효기간 내 인증서, 수상 등)

6-1. 신정기업 환경산업 역량평가 (제조/건설업)

환경사업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전략	기술 및 사업확대에 대한 경영진 의지, 리스크 관리등의 경영활동 평가, 국내외 고객 확대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장확대 전략	주력산업의 시장 현황에 따른 성장현황, 관련시장 성장가능성, 국내 거래처 현황 및 해외 거래처 확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경제품 기술성	
기술 전략	주력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기술(특허 및 실용실안권 등) 포트폴리오 현황, 제품의 다양성 및 기술네트워크 보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형태, 특징에 대한 기술 및 관련시장에서의 차별화 전략 기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경산업 성장성	
수출 전략	해외시장 개척활동, 해외 진출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용창출 전략	신규고용창출에 대한 의지 및 전략, 사업 확대등에 따른 고용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업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지역연계 환경프로그램 수행여부 (최근 3년 이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략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신정기업 환경산업역량 기업은 자유형식에 따르며, 최대 10page를 넘지 않도록 함

6-2. 신정기업 환경산업 역량평가 (유통/서비스업)

환경사업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전략	기술 및 사업확대에 대한 경영진 의지, 리스크 관리등의 경영활동 평가, 국내외 고객 확대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장확대 전략	주력산업의 시장 현황에 따른 성장현황, 관련시장 성장가능성, 국내 거래처 현황 및 해외 거래처 확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경제품 기술성	
서비스 제공능력	기존 서비스에 비하여 독창성, 동사의 서비스가 모방 용이성, 가격 경쟁력, 납기 준수 등 서비스 차별화 전략, 지식재산권(특허 및 실용실안권 등) 포트폴리오 적합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경산업 성장성	
고용창출 전략	신규고용창출에 대한 의지 및 전략, 사업 확대등에 따른 고용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업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지역연계 환경프로그램 수행여부 (최근 3년 이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략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신정기업 환경산업역량 기업은 자유형식에 따르며, 최대 10page를 넘지 않도록 함

【덧붙임 3】 가점기준

항 목	가점
환경신기술(NET)인증기업 ISO14001인증, 이노비즈인증기업, 환경친화기업지정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지식인 선정, 장영실상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탄소인증, 녹색기업, 우수재활용제품 경기도 지정기업(일자리, 수출, 유망중소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부, 중기청, 산업부) 성공 종료기업(환경분야만 해당) 도지사 훈격 수상(기업대상, 3년이내)	해당항 목 별 1점 부여 (최대 5점)

* 관련 증빙서류는 제출되어야 하며, 최대 5개 항목 인정

【덧붙임 4】 환경산업 특수분류표 (통계청, 2011.04.01.)

분류 기호	KSIC (9차)	항목명	품 목 명
1		환경기기 및 용품 제조업	
11		오염관리 관련 용품 제조업	
111		대기오염 통제기기 제조	
1111		기체취급기기	
1111a	2912 0*	유압기기 제조업	슬러지 이송
1111b	2913 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진공펌프, 냉장설비용 압축기, 예인용의 바퀴달린 사시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기타 기체 압축기 및 후드, 관련 부분품
1112		축매권버터	
1112a	2917 4*	기체 여과기 제조업	기체여과기와 청정기, 관련부품
1112b	3039 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배기가스 감소장치, 매연저감장치(DPF), 디젤산화촉매장치(DOC)
1113		화학적 복구 시스템	
1113a	0711 1*	석회석 광업	석회석용제
1113b	0809 0*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1113c	2011 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활성토
1113d	2012 9*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1113e	2331 2*	석회 및 플라스틱 제조업	소석회와 수경성석회
1113f	2917 4*	기체 여과기 제조업	기체여과기와 청정기, 관련부품
1114		집진기	
1114a	2917 4*	기체 여과기 제조업	기체여과기와 청정기, 관련부품
1115		분리기, 칩진기	
1115a	2312 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기타 유리섬유 제품
1115b	2917	기체 여과기 제조업	기체여과기와 청정기, 관련부품

	4*		
1115c	2917 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기체액회용 기기
1115d	2919 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물질취급 기계
1116		소각로, 세정기	
1116a	2915 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기타 비전기식 노 및 소각로,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기타의 노와 오븐, 관련부품
1116b	2917 4*	기체 여과기 제조업	기체여과기와 청정기, 관련부품
1117		냄새방지 장비	
1117a	2919 4*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	액체 또는 분말의 살포기 및 부분품
112		폐수관리 기기 및 제품 제조업	
1211		공기주입 시스템	
1211a	2912 0*	유압기기 제조업	슬러지 이송
1211b	2913 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진공펌프, 냉장설비용 압축기, 예인용의 바퀴달린 사시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기타 기체 압축기 및 후드, 관련 부분품
1122		화학적 복구 시스템	
1122a	0711 1*	석회석 광업	석회석용제
1122b	2012 9*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염소, 고체수산화나트륨, 액체수산화나트륨(소다 또는 액상소다),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수산화알루미늄, 아황산나트륨, 기타 아황산염, 포스포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 및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인산염, 인산나트륨, 인산칼륨, 인산칼슘
1122c	2013 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산화망간(일산화망간, 이산화망간), 일산화연
1122d	2020 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무수암모니아
1122e	2049 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활성탄, 폐수처리용 미생물처리제
1122f	2331 2*	석회 및 플라스틱 제조업	소석회와 수경성석회
1122g	2917 5*	액체 여과기 제조업	물의 여과 및 청정용 기기, 액체여과용 기타 기기, 관련부품
1123		기름 및 물 분리기	
1123a	2917 5*	액체 여과기 제조업	물의 여과 및 청정용 기기, 액체여과용 기타 기기(폐수처리기기), 관련부품
1123b	2919 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원심분리기, 관련부품, (폐액용제 프레온 회수기)
1124		선별기, 여과기	
1124a	2229 9*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이온교환수지컬럼
1124b	2917 5*	액체 여과기 제조업	물의 여과 및 청정용 기기, 액체여과용 기타 기기, 관련부품
1125		오수 처리기	
1125a	1321 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기타 섬유제의 파일 및 셔닐 직물
1125b	2522 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정화조
1125c	2512 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용적이 300리터이상의 탱크 및 통
1125d	2599 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용적이 300리터이하인 탱크 및 통
1125e	2911 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수력터빈, 관련부품
1125f	29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폐기물소각로: 기타 비전기식 노 및 소각로,

	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기타의 노와 오븐, 관련부품
1125g	2919 1	일반저울 제조업	최대측정용량 5000킬로그램 이하의 중량측정기기 및 기타 중량측정기기
1125h	2919 4*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액체 또는 분말의 살포기 부분품
1126		수질오염조절기기, 폐수재활용 기기	
1126a	2721 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수질오염 조절기기
1127		물 취급기기	
1127a	2599 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주철제 주물제품
1127b	2912 0*	유압기기 제조업	
1127c	2913 1*	액체 펌프 제조업	용적형 및 수지식 펌프, 기타의 용적형 왕복펌프, 기타의 용적형 회전펌프, 기타의 원심펌프, 기타 펌프
1127d	2913 0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감압밸브, 체크밸브, 안전밸브, 기타의 탭·코크·밸브
1127e	2721 3*	물질검사·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용 검사기기, 압력의 측정 또는 검사기기
113		폐기물 관리기기 제조업	
1131		유해폐기물 보관 및 처리 기기	
1131a	2332 9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기타의 시멘트 및 콘크리트 제품
1131b	2599 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연체의 기타 제품
1131c	2915 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유리화기기
1131d	2732 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레이저기기
1132		폐기물 수집기기	
1132a	2229 9*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 가정용품(화장실용품), 쓰레기통의 플라스틱제 안감
1132b	3399 4	비 및 솜 제조업	수지식 비, 기계 및 기구의 부품이 되는 브러쉬, 기계식 바닥청소기
1133		폐기물 처리 기기	
1133a	2221 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폴리프로필렌 판
1133b	2851 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폐기물압축기,음식물처리기/건조기,관련부품(탈취필터)
1133c	3012 2	화물자동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폐기물처리 차량, 청소차량
1134		폐기물 취급장비	
1134a	2890 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폐기물 취급장비
1134b	2929 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산업용 폐기물 압축기, 건조기, 탈수기, 탈취장비
1135		폐기물 분리기기	
1135a	2890 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자석식 분리기
1135b	2929 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폐기물선별기(중력,부력,공기등)
1136		재활용 장비	
1136a	2919 2	포장기 및 용기세척기 제조업	용기를 세정 또는 건조하는 기기
1136b	2924 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흙, 돌, 모래 등을 반출 또는 혼합하는 기기
1136c	2890 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혼합 및 파쇄하는 기타 기기,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타기기(폐기물재활용기기-음식쓰레기발효기, 폐전선절단 및 동회수기기)
1136d	292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건조기(열식, 산업용), 물질건조기(농산물제외),

	9*		폐기물처리기기
1137		소각로	
1137a	2915 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폐기물소각로: 기타 비전식식 노 및 소각로,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기타의 노와 오븐, 관련부품
114		토양, 지표수, 지하수 개선 및 정화기기 제조업	
1141		정화기기	
1141a	2732 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레이저기기(측정용)
1141b	3900 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1141c	3900 9*	기타 환경정화 및 복원업	
1142		수처리 기기	
1142a	2890 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고유기능을 갖는 기타 전기기기(이온정수기 등), 오존발생기(전기식)
1142b	2732 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계면활성화학물질(세척제가 아닌 것), 기름유출정화기기
1142c	3900 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1142d	3900 9*	기타 환경정화 및 복원업	
115		소음 및 진동 저감장치 제조업	
1151		소음기	
1151a	2890 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식 소음감쇄기
1151b	3031 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부품, 디젤(세미디젤) 엔진 전용부품
1151c	3039 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1151d	3039 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자동차 소음기와 배기관
1152		진동방지 시스템	
1152a	2890 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진동방지장치
1152b	2929 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1153		방음벽	
1153a	2511 3	금속조립구조체 제조업	금속제 방음벽
1153b	2222 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 방음벽
1153c	2332 6	콘크리트판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콘크리트제 방음벽
116		환경감시, 분석 및 측정장치 제조업	
1161		측정 및 감시기기	
1161a	2721 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1161b	2721 3*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온도계와 고온계, 액체비중계·기압계·습도계 등, 액체 또는 기체를 측정하는 기타기기 및 관련부품, 가스 또는 메연분석용 기기, 크로마토그래프, 분광계, 노출계, 광선율 이용하는 기타기기, 물리 또는 화학적분석용의 기타기기, 마이크로톤을 포함한 관련부품, 기타의 광학기기,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기기, 자동차 배기가스분석기, 소음 및 진동측정기
1161c	2721 5*	기기를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메노우스타트, 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자동조절 및 제어기기, 기타 자동조절 및 제어기기
1162		공정제어기기	
1162a	2812 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환경조절 제어반
1162b	2721	기기를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온도자동조절용 기기

	5*		
1162c	2721 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환경조절 시스템기기(폐수처리 제어장비등)
12		정정제품 제조업	
121		정정 및 자원효율 제품 제조업	
1211		정정 및 자원효율 제품 제조업	
1211a	2011 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수탄대체물질
1211b	2012 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과산화수소
1211c	2042 1	일반용 도로 및 관련제품 제조업	수성매질에 분산된 페인트와 바니쉬
1211d	2049 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물기저의 접착제
1211e	2049 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프레온(CFC) 대체물질
1211f	2512 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이중외피의 기름탱크
1211g	2890 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저소음 압축기
1211h	2929 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13		자원관리 관련 제조업	
131		발전, 수도사업 및 에너지 보존 관련업	
1311		물 공급 관련업	
1311a	1120 2	생수 생산업	미네랄 워터
1311b	2012 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염소, 증류수 또는 전도된 물
1311c	2030 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이온교환수지(중합체)
1311d	3601 0	생활용수 공급업	정수장,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
1311e	3602 0	산업용수 공급업	공업용수, 상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
1312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업	
1312a	1112 1	주정 제조업	에탄올
1312b	2011 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메탄올
1312c	2912 0*	유압기기 제조업	풍차, 풍력터빈
1312d	2852 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즉시식 또는 저장식의 물가열기(비전기식의 것), 태양열 집열 가열장치
1312e	2915 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1312f	2811 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재생에너지발전 세트, 바이오메스 포함
1312g	2612 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광전지를 포함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1312h	3511 1*	원자력 발전업	
1312i	3511 2*	수력 발전업	수력, 소수력
1312j	3511 3*	화력 발전업	바이오메스(목재, 폐기물, 허수오니등)
1312k	3511 9*	기타 발전업	태양력, 풍력, 조력, 지열 발전업
1313		열 및 에너지 보존 및 관리관련 제조업	
1313a	2049 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촉매제
1313b	2312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기타유리섬유제품

	1*		
1313c	2312 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니트
1313d	2513 0	핵반응기 및 증기발전기 제조업	캐셀 보일러
1313e	2915 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기름 및 기체연료외의 연료이용 버너
1313f	2917 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열펌프
1313g	2917 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열교환기 및 관련부품
1313h	2841 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형광램프(열 음극형의 것)
1313i	2612 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태양전지
1313j	2721 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기계 및 액체용 적산계기
1313k	2721 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온도자동조정용 기기
1313l	3012 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전기 자동차, 수소, 하이브리드, 태양광, 천연가스 자동차
1313m	3511 1*	원자력 발전업	
1313n	3511 2*	수력 발전업	
1313o	3511 3*	화력 발전업	
1313p	3511 9*	기타 발전업	지역 열병합 발전소, 태양력, 풍력, 조력, 지열 발전업
132		재생재료 및 재활용제품 제조업	
1321		재생유지 및 사료 제조업	
1321a	1040 1	동물성 유지 제조업	재생유지, 정제안된 동물유제생
1321b	1080 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음식찌꺼기를 이용한 사료
1322		직물 및 의복제품 제조업	
1322a	1322 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재생직물
1323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1323a	1711 0	펄프 제조업	고지를 이용한 펄프제조
1324		석유정제물 제처리업	
1324a	1922 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재생윤활유, 재생그리스 제조
1324b	1922 9	기타 석유정제물 제처리업	재생유류 정제품, 석유아스팔트물질 제조
1325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325a	2011 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페업산, 폐유기용제 등 화학물질 재생
1325b	2011 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재생 벤젠, 피치
1325c	2011 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페수탄
1325d	2011 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재생 유기화학물
1325e	2012 1	산업용 가스제조업	재생가스
1325f	2012 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재생무기화학물
1325g	2013 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재생산화아연, 니켈 등
1325h	2030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폐플라스틱 이용

	3		
1325i	2049 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제활용 유지 및 부산물이용
1325j	2050 2	제생섬유 제조업	라이온 섬유, 알기네이트 섬유
132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326a	2211 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고무타이어제생용개벨스트립
1326b	2211 2	타이어 제생업	제생타이어
1326c	2219 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생고무제품
1326d	2221 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제생 필름, 시트
1326e	2225 0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제생 우레탄, 스펀지 등
1327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1327a	2312 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패유리를 이용한 건축용, 산업용 유리 제조
1327b	2319 9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제활용 유리제품(장난감, 비드 등)
1328		금속제품 제조업	
1328a	2411 1	제철업	철스크랩가공품
1328b	2411 2	제강업	철스크랩가공품
1328c	2411 3	합금철 제조업	철스크랩가공품
1328d	2411 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철스크랩가공품
1328e	2421 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비철금속스크랩가공품
1328f	2421 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비철금속스크랩가공품
1328g	2421 3	연(납)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비철금속스크랩가공품
1328h	2421 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비철금속스크랩가공품
1329		제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329a	3830 1*	금속원료 제생업	제활용 제품을 이용한 원료 생산
1329b	3830 2*	비금속원료 제생업	제활용 제품을 이용한 원료 생산
2		환경관련 건설업	
24		오염관리 관련 건설업	
241		대기오염 통제관련 건설업	
2411		대기오염통제관련 건설업	
2411a	4122 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사설 건설업	대기오염방지사설공사
242		오폐수관리관련 건설업	
2421		오폐수관리관련 건설업	
2421a	4122 3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공사업	하수로 건설
2421b	4122 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사설 건설업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분뇨처리 시설공사
2421c	4220 1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건물하수시설공사, 환기시설공사 등
2421d	4220 4	소방시설 공사업	
243		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업	
2431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업	
2431a	4122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사설 건설업	폐기물선별시설 설치공사, 폐기물소각장(고형

	4*		용해) 설치공사
244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건설업	
2441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건설업	
2441a	4122 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사설 건설업	소음방지시설 설치공사
2441b	4220 3	방음 및 내화공사업	방음공사
25		자원관리 관련 건설업	
251		자원관리 관련 건설업	
2511		자원관리 관련 건설업	
2511a	4122 6	조경건설업	녹지조성공사, 생태환경 조성공사 등
2511b	4122 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급배수관, 파이프라인공사, 상수도 및 중수로 시설공사 등
2511c	4211 0	건물 및 구축물 해체공사업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물질의 판매
2511d	4122 3*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공사업	
3		환경관련 유통업	
36		오염관리 관련 유통업	
361		폐기물 관리관련 유통업	
3611		환경 관련 기계장비 임대업	
3611a	6931 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폐기물 취급 건설장비
3611b	6939 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폐기물 취급 기계장비
37		자원관리 관련 유통업	
371		제활용제품 유통업	
3711		제활용 제품 도매업	
3711a	4679 1	제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제생용 금속, 비금속, 플라스틱, 고섬유, 고무, 고지 수집 및 판매
3712		제활용 제품 소매업	
3712a	4786 1	중고가구 소매업	사무용가구, 가정용가구 소매
3712b	4786 2	중고 가전제품 소매업	중고 냉장고, 밥솥 등 소매
3712c	4786 9	기타 중고상품 소매업	중고악기 등 소매
4		환경관련 서비스업	
48		오염관리 관련 서비스업	
481		대기오염 통제관련 서비스업	
4811		대기오염통제관련 서비스업	
4811a	8421 3*	환경행정	대기오염방지 관련 환경행정
4811b	9493 1*	환경운동단체	대기오염방지활동
482		폐수관리 관련 서비스업	
4821		폐수관리관련 서비스업	
4821a	3701 1	하수처리업	하수처리(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사업단위 포함), 하수펌프장, 하수도관시설운영
4821b	3702 1	분뇨처리업	분뇨처리(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사업단위 포함), 정화조정소영, 화장실운영
4821c	3702 2	축산분뇨 처리업	축산분뇨수집 및 운반, 축산폐수 공용처리시설, 동물사체 수집 및 처리
4821d	3900 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821e	3701 2*	폐수 처리업	오폐수 처리업(수집운반 포함)
483		폐기물 관리관련 서비스업	
4831		유해폐기물관리 관련 서비스업	
4831a	3812 0*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위험 폐기물 운반, 지정폐기물수집운반(폐석면, 폐합성고무, 슬래그(광재), 분진 등),

			병원폐기물수집운반
4831b	3900 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831c	3822 0*	지정 폐기물 처리업	유해폐기물, 의료폐기물처리
4831d	3824 0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4832		일반폐기물관리 관련 서비스업	
4832a	3811 0	지정의 폐기물 수집 운반업	일반 폐기물 운반, 무해고체폐기물수집운반,생활폐기물수집운반
4832b	3813 0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
4832c	3821 0	지정의 폐기물 처리업	비위험 일반 폐기물 처리, 무해폐기물소각로운영, 무해폐기물매립장운영
4832d	3823 0	건설 폐기물 처리업	건축관련폐기물(건설 해체물 등)의 처리시설을 운영
4832e	7421 2*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거리청소서비스, 도로청소서비스
484		토양, 지표수, 지하수 청소 및 개선관련 서비스업	
4841		토양, 지표수, 지하수 청소 및 개선관련 서비스업	
4841a	3900 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4841b	3900 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841c	7421 2*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탱크청소, 상하수도관 청소
485		환경연구개발 관련 서비스업	
4851		환경연구개발 관련 서비스업	
4851a	7011 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토양학, 지구과학, 기상학 등
4851b	7012 1	전기·전자공학연구개발업	환경관련 연구개발, 환경공학연구
4851c	7012 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486		환경관련 계약 및 엔지니어링	
4861		기획 및 설계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861a	7212 2*	환경건설링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관련상담 및 자문, 환경 및 위생엔지니어링
4862		환경영향평가 및 감사	
4862a	7212 2*	환경건설링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영향평가, 환경부지평가
4863		범무관련 환경 서비스업	
4863a	7110 1	변호사업	환경관련 법무서비스
4863b	7110 2	변리사업	환경관련 특허서비스
487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관련 서비스업	
4871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관련 서비스업	
4871a	7291 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대기오염 측정분석,환경요인 측정분석
488		교육, 훈련, 정보관련 서비스업	
4881		교육, 훈련, 정보관련 서비스업	
4881a	8522 9	기타 기술 및 직업고등학교	환경 관련 교육
4881b	8530 3	대학원	환경대학원
4881c	8565 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환경 관련 교육
49		자원관리 관련 서비스업	
491		자원관리 관련 서비스업	
4911		자원관리 관련 농림어업 서비스업	
4911a	014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수수료에 의한 작물재배서비스

	1		
4911b	0142 0	축산관련 서비스업	인공수정, 품종개량 등
4911c	0201 2	육림업	식목 및 보호활동
4911d	0204 0	임업관련 서비스업	산불방지 및 병충해 방지 등 서비스
4911e	0321 3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어족보존을 위한 부화 및 종묘 생산서비스
4911f	0322 0	어업관련서비스업	어족보호서비스
4911g	7430 0	조정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도로면, 공원 등 조정식재 파종 및 유지관리
4911h	9023 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천연기념물 등 희귀 동식물 관리
4911i	9023 2*	자연공원 운영업	자연공원 및 야생생물 보존
4912		자연재해 및 기타 자원관리 서비스업	
4912a	0809 0*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광산배수 서비스
4912b	2912 0*	유압기기 제조업	
4912c	7292 3	지질조사 및 탐사업	광물채굴 목적 이외의 지질조사, 지구물리학적 조사 및 탐사 서비스
4912d	7390 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상서비스
4912e	7410 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플랜트시설 유지관리
4912f	8421 3*	환경행정	자연방재 관련 행정서비스업
4912g	7310 0	수의업	희귀동물 치료 및 실험서비스
4912h	9023 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천연기념물 등 희귀 동식물 관리
4912i	9023 2*	자연공원 운영업	자연공원및야생생물보존
4912j	9493 1*	환경운동단체	생태, 자원관리 관련 환경보호단체

【붙임 2】

세부 심사기준

제조업, 건설업

○ 1차평가(60점+가점)

대분류	항목	지표	측정 단위	점수	산출방식	점수화				
						a	b	c	d	e
경영일반 (20점)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계량	5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전기매출액	20%이상	ratio 평가			
	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률	계량	5	(영업이익*100)/매출액	9%이상	ratio 평가			
	안정성	○ 부채비율	계량	5	(부채총계*100)/자본총계	80%미만	ratio 평가			
	활동성	○ 자기자본회전율	계량	5	(당기매출액/당기자기자본)*100	150%이상	ratio 평가			
유망성 (20점)	수출실적	○ 수출액비율	계량	10	(당기수출액/당기매출액)*100	15% 이상	ratio 평가			
	고용실적	○ 상시고용 인원	계량	5	당기 근로자수	40인 이상	30인 이상 ~40인 미만	20인 이상 ~30인 미만	10인 이상 ~20인 미만	10인 미만
	고용실적	○ 상시고용인원 증가	계량	5	(당기 근로자수-전기 근로자수)/전기 근로자수*100	20% 이상	ratio 평가			
환경산업 개발실적 (20점)	환경실적	○ 환경분야 추진실적 율	계량	10	(당기 환경분야 매출액/당기매출액)*100	95% 이상	ratio 평가			
	기술화	○ 기술개발투자율	계량	5	(연구활동비/매출액)*100	9% 이상	5%이상 ~9%미만	3%이상 ~5%미만	2%이상 ~3%미만	2%미만
	경쟁력	○ 지식재산권	계량	5	산업재산권(특허 건당 1점 및 실용신안 건당 0.5점)	건 수 합계				

○ 2차평가(40점)

대분류	항목	지표	측정 단위	점수	산출방식	점수화				
						a	b	c	d	e
환경사업 비즈니스 모델 (15점)	비즈니스 전략	○ 환경산업 전략	비계량	10	정성평가	기술 및 사업확대에 대한 경영진의지 리스크 관리 등의 경영활동평가 국내외 고객확대에 대한 전망 등				
	시장확대 전략	○ 주력산업 시장 성장가능성	비계량	5	정성평가	주력산업의 시장현황에 따른 성장현황 관련 시장성장 가능성				
환경제품 기술성 (10점)	기술 전략	○ 제품 보호성	비계량	10	정성평가	주력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적합성 제품의 다양성 및 기술네트 워크보유				
환경산업 성장성 (10점)	수출 전략	○ 주력제품 시장진출 전략	비계량	5	정성평가	해외시장 개척활동 여부 해외진출 가능성				
	고용창출전략	○ 신규고용창출 가능성	비계량	5	정성평가	신규고용창출에 대한 의지 및 전략화 사업확대 등에 따른 고용확대 가능성 등				
기업 지속가능성 (5점)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비계량	5	정성평가	지역연계 환경프로그램 수행여부 (지속성,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 사회적책임 역할가능성 (전략 및 향후계획 등 평가)				

□ 유통업, 서비스업

○ 1차 정량평가(60점+가점)

대분류	분류	지표	측정 단위	점수	산출방식	점수화				
						a	b	c	d	e
경영일반 (20점)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계량	5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100/전기매출액	20%이상	ratio 평가			
	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률	계량	5	(영업이익*100)/매출액	5%이상	ratio 평가			
	안정성	○ 부채비율	계량	5	(부채총계*100)/자본총계	80%미만	ratio 평가			
	안정성	○ 유동비율	계량	5	(유동자산*100)/유동부채	150%이상	ratio 평가			
유망성 (20점)	서비스 기술	○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비용	계량	10	전년도 교육훈련비/전년도 총매출액	10% 이상	ratio 평가			
	고용실적	○ 상시고용인원 증가	계량	5	(당기 평균근로자수-전기 평균근로자수)/전기 평균근로자수*100	20% 이상	ratio 평가	20인 이상 ~30인 미만	10인 이상 ~20인 미만	10인 미만
	고용실적	○ 전문인력의 비율	계량	5	전체 전문인력의 총 수/ 전체 종업원의 총 수	70% 이상	ratio 평가			
환경산업 개발실적 (20점)	환경실적	○ 환경분야 추진실적 율	계량	10	(당기 환경분야 매출액/ 당기매출액)*100	95% 이상	ratio 평가			
	기술화	○ 기술개발투자율	계량	5	(연구개발비/매출액)*100	9% 이상	5%이상~9% 미만	3%이상~5% 미만	2%이상~3% 미만	2%미만
	경쟁력	○ 지식재산권	계량	5	산업재산권(특허 건당 1 점 및 실용신안 건당 0.5 점)	건 수 합계				

○ 2차 정성평가(40점)

대분류	분류	지표	측정 단위	점수	산출방식	점수화				
						a	b	c	d	e
환경사업 비즈니스모 델 (15점)	비즈니스 전략	○ 환경산업 전략	비계량	10	정성평가	기술및사업확대에 대한 경영진의지 리스크관리등의 경영활동평가 국내외고객확대에 대한 전망등				
	시장확대 전략	○ 주력산업 시장 성장가능성	비계량	5	정성평가	주력산업의시장현황에 따른 성장현황 관련시장 성장가능성				
환경제품 기술성 (10점)	서비스제공능 력	○ 서비스 경쟁력	비계량	10	정성평가	기존서비스에 비하여 독창성,동사의서비스 모방용이 성, 가격경쟁력,납기준수등 서비스 차별화 전략 지식재산권포트폴리오적합성				
환경산업 성장성 (10점)	고용창출전략	○ 신규고용창출 가능성	비계량	10	정성평가	신규고용창출에 대한 의지및전략화 사업확대등에 따른 고용확대가능성등				
기업 지속가능성 (5점)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비계량	5	정성평가	지역연계환경프로그램수행여부(지속성,적합성등에대 한평가) 사회적책임역할가능성(전략및향후계획등평가)				

【붙임 3】

도 및 관계기관 인센티브(17종)

구분	인센티브	비고
홍보담당관	◦ 기업홍보물에 경기도 휘장 사용권 부여	
기업정책과	◦ 정부사업 참여전략 컨설팅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5점)	
기업정책과	◦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기업지원2과	◦ 녹색에너지제품 해외인증 취득 신청 시 가점 부여(2점)	
기업지원2과	◦ 녹색에너지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가점 부여(2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 G-패밀리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 경기도 우수기업홍보관 입점 시 가점 부여(5점)	
	◦ R&DB센터, 중기센터 입주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 경기벤처빌딩 입주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경기테크노파크	◦ 기술닥터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 웹메일호스팅(윈도우) 서비스사업 신청 시 1년 무상 지원	
	◦ 경기TP단지 입주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2점)	
	◦ 기술경영 최고위 과정 신청 시 제조기업은 무심사 합격	
한국무역협회	◦ 무역기금 융자사업 가점 부여(5점)	
한국무역보험공사	◦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최대 2배)	
	◦ 수출보험 보증료 할인(10%)	
수원상공회의소	◦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추가 가점(최대 10점)	

1.2 시범운영 결과

○ 선정기업 : 총 27개사 주 11개사 선정(건설제조 9, 유통서비스 2)

번호	기업명	소재지	제조건설	유통서비스
1	(주)범석엔지니어링	안산	1	
2	(주)에이치엔텍	평택	1	
3	(주)에이피엠엔지니어링	부천	1	
4	아름다운환경건설(주)	성남		1
5	청해ENV주식회사	파주	1	
6	해성엔지니어링(주)	수원	1	
7	엠에이티플러스	안성	1	
8	(주)동일캔버스엔지니어링	평택	1	
9	(주)네오위드넷	성남		1
10	(주)포스벨	화성	1	
11	덕산실업(주)	안성	1	

2.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2.1 향후 계획

- '14년도 추진일정
 - '13. 12. : 우수환경기업 지정결과 공고
 - '13. 12. : 지정서 및 현판수여
 - '14. 1 : 우수환경기업에 대한 맞춤형 사업 지원
해외 환경인증 취득, 해외 환경전시회 참여 등

2.2 연구 기대효과

- 연구의 주요사항
 - 본 연구에서는 인증제도라는 명칭을 지정제도로 변경하여 추진함
 - 인증 -> 지정을 통한 산업군, 업체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경기도청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되, 시범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
 - 단순 지원방식이 아닌 운영기관(테크노파크)의 협조를 통해 시범사업 의견청취를 통해 인센티브 제도화 추진
- 주요 기대효과
 - 경기도내 우수한 환경기업을 경기도에서 직접 평가·인증 및 홍보함으로써 도내 환경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경쟁력 제고
 - 환경인증 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확대
 - 우수 환경기업 발굴·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 환경기술검증 국제상호인증체계 구축에 따른 해외사업 진출 활성화

참 고 문 헌

환경부, 2011년 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 2012년 12월,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환경산업의 정의와 분류, 2009년
환경부, 자원순환 산업 분류체계 구축 및 산업통계조사 방안 마련 연구
중소기업청, 2013년도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중소기업청, 2013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
경기도청, 2013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
경기도청, 2013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2013년도 하반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인증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2013년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노사발전재단, 2013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제도 매뉴얼
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공고 및 지정제외 등 세부매뉴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녹색인증 지원사업
경상북도,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 안내 공고,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11-78호
경기도 녹색기업지원시스템, 경기도 녹색기업지원시스템 Green-All

<http://www.ecologo.org/en/certifiedgreenproducts/category.asp?>

<http://www.greenseal.org/GreenBusiness/Certification/WhyCertific>

<http://www.greenbusinessca.org/>

<http://www.environmentla.org/cgbp/criteria.html#specific>

<http://www.ecomark.jp/english/>

<http://www.thenorthwestfund.co.uk/the-funds/energy-and-environmental>

<http://www.ehp.qld.gov.au/ecobiz/>

<http://energy.maryland.gov/allincentives.html>

<http://www.greenlabel.sg/>

<http://www.census.gov/cgi-bin/sssd/naics/>

주 의 문

2013년 최종연구보고서

경기도내 환경산업분야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발행인 : 센터장 원 호 식

발행일 : 2013년 11월

발행처 :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한양대학교 내

전 화 : 031-400-4236, 436-8141~5

팩 스 : 031-400-4237

e-mail : agec@agec.or.kr

※ 주 의

1. 이 보고서는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시행한 환경기술연구 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시행한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